

정책연구 보고서

---

# 통합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추진방안

---

1999. 9.

제주발전연구원  
Cheju Development Institute

『정책연구 보고서』

# 통합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추진방안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the Management  
Strategy of the Total Impact Assessment

1999. 9.

연구책임 : 황 경 수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제 주 발 전 연 구 원  
Cheju Development Institute

##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규제 중심의 행정행위를 능률과 실천성을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분권화·효율화를 실현시켜 나가므로써 사회 발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체계의 행정 특성과 업무량의 방대함에 따른 대응력의 미흡등으로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사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여 행정의 현대화를 기필코 실현해야 하고 제도의 개선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연구는 사회적 효율성을 기조로 시도되었다. 모든 제도는 실현상에 상충점이 있게 마련이나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별 영향평가 제도들을 모아 하나의 영향평가제도로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00년 1월부터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모아서 통합영향평가로 시행할 계획 아래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통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제화를 제안했고, 이미 개별 영향평가 보고서를 하나로 모아 평가하는 실질적인 통합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본 연구원은 미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온 개별 영향평가제도와 제주도에서 실시해온 영향평가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영향평가제도가 제주지역 주민, 개발사업자와 자치단체 모두에게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앞으로 영향평가 운영에 자치단체의 역할과 관심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보고서는 지역 차원에서 연구한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추진 방안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가 참고가 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존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1999년 9월 일

제주발전연구원장

# 목 차

## <머리말>

I. 연구의 필요성 .....	1
II. 연구 방법 .....	3
III. 영향평가제도의 개관 .....	4
1. 환경영향평가제도 .....	4
2. 교통영향평가제도 .....	8
3. 재해영향평가제도 .....	8
4. 지하수영향조사제도 .....	9
5. 경관영향평가제도 .....	10
6. 영향평가제도의 범위 비교 .....	11
7. 우리나라 영향평가제도 운영 실태 .....	15
IV.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	19
1. 미국 환경영향평가제도 .....	19
2. 영국 환경영향평가제도 .....	21
3. 프랑스 환경영향평가제도 .....	21
4. 캐나다 환경영향평가제도 .....	21
5.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제도 .....	22
6. 외국 영향평가제도의 특징 .....	22

V. 우리나라 개별 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	24
1.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24
2.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 .....	36
3. 지하수영향조사의 문제점 .....	39
4.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	41
5. 개별 영향평가 실시의 문제점 .....	43
VI.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추진 방향 .....	46
1. 통합영향평가제도의 논의 과정 .....	46
2. 통합영향평가지 도입해야 할 제도 .....	55
3.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제도 추진 방향 .....	65
4.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예상 문제점 .....	67
5.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세부 추진 전략 .....	69
VII. 제 언 .....	78
참고문헌 .....	81
부록	
I.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영향평가 관련 조항 .....	86
II.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 .....	104

## 표 차 례

<표 3-1>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	10
<표 3-2> 영향평가제도의 범위 비교 .....	12
<표 3-3> 각종 영향평가제도 운영 비교 .....	16
<표 3-4> 연도별 제주도의 영향평가 심의 실적 .....	17
<표 3-5> 중복평가 실시 현황('94-'98, 환경영향평가 기준) .....	18
<표 5-1> 환경영향평가의 취지 및 목적 .....	25
<표 5-2> 환경영향평가의 시기 .....	25
<표 5-3>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	26
<표 5-4>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	27
<표 5-5>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	32
<표 5-6>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	33
<표 5-7> 환경영향평가 운영 관리 .....	34
<표 5-8>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무시 .....	35
<표 5-9> 교통영향평가 사업 범위 .....	36
<표 5-10>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	37
<표 5-11>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	37
<표 5-12> 교통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	38
<표 5-13> 공공기관의 교통영향평가 무시 .....	38
<표 5-14>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 .....	39
<표 5-15> 경관영향평가 범위 .....	42
<표 5-16> 경관영향평가의 주민 참여 .....	43
<표 6-1> 통합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	66
<표 6-2>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및 교통영향평가 지정업체 .....	70

## 그림 차례

<그림 4-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	20
<그림 6-1>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업무 처리 절차 .....	47
<그림 6-2> 포괄적인 계획과 평가체계내에서의 사업과 평가의 순서 .....	57
<그림 6-3> 전략환경평가 과정도 .....	58

##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사안별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 교통, 재해, 경관, 지하수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개별 영향평가제도는 영향평가 사이에 항목의 중복, 주민참여 과정의 비합리성, 처리 기간의 지연, 같은 사안에 대한 분야별 평가마다 의견이 다를 경우 조정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거시적 차원으로서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영향평가제도의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할 경우에도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역기능은 국내 개발 사업자에게도 공히 적용되어 IMF상황 아래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즉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의 내실화와 아울러 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으로 사업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영향평가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문제에 대한 계획과 심의, 평가 등을 중앙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그 결과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는 제주도지사가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심의하고 협의하며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권은 중앙부처에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거시적으로 살펴 보았지만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유형별로 성찰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그 중 통합영향평가로 전환할 경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맥락이 개발사업자나 대행기관의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의 연구가 아니라 기존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합영향평가제도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교통촉진법상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것보다 더 효



유효적인 사전 예방 수단으로서 통합영향평가가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 연구를 하는 것이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 대한 내용, 외국제도와와의 비교 분석,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된 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등 일련의 연구를 해석적 연구방법으로 선택했다.

본 연구의 구성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제도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개별 영향평가들의 법제와 이론서를 참고하여 정리했다.

둘째, 외국제도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제도라는 틀에 우리나라의 제도를 투영해 보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개선점을 찾으려는 부분이다. 외국제도를 소개한 참고도서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영향평가제도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부분이다. 문제점의 분석은 신문에 보도되었던 관계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문헌을 참고하여 전문가나 실무자들이 지적한 내용을 모았다.

언론 분석은 중앙일간지, 전문지, 지방일간지 중 PC통신을 통해서 과거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신문을 대상으로 했다.

보도 내용은 1993년 이후 기사 중 “영향평가”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기사를 검색한 후, 그 내용들을 분야별로 정리·분석했다. 분야별 문제점 중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요약하여 본 연구에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중복되는 기사는 어느 하나의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신문별 기사의 양은 의미가 없다.

넷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영향평가제도의 논의 과정은 사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운용돼 왔는지 살펴 보았다.

다섯째,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의 핵심인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분야별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통합영향평가 세부 추진 전략은 신문 분석과 외국의 제도 검토, 그외 전문가와의 면접 등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종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Ⅲ. 영향평가제도의 개관

#### 1. 환경영향평가제도

##### 1)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환경영향평가와 타 영향평가간에는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다소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론을 제시할 수 있다.<sup>1)</sup>

##### ① 사전예방성

개발사업 시행이 주변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하고 미리 그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② 합목적성

종래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주요한 요소는 사업의 경제성 측면과 계획의 실현을 위한 기술적인 가능성 측면 등에 있었으나 지금은 환경이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 환경이라는 공공재의 가치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각종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면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는 최선의 사업계획이라고 자신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활동은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크다고 하겠다.

##### ③ 절차의 민주성

---

1) 노재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세미나 발표집」, 환경청, 1981.10, p.65 / 최병찬·최원영, 「환경영향평가제도-이론과 실제」, 녹원출판사, 1993, p.16.

도시기본계획 입안 등 일부 계획 활동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단위 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장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공람 과정과 주민의 참여는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관한 절차적 민주성을 기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④ 의사결정 도구로서의 조정성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합리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고려되고 예측된 여러 가지의 부정적 검토 사항이 수록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나 최종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역할은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지니게 되는 중요한 조정기능이 된다.

#### ⑤ 정보성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당해 지역 주변의 환경 현황과 장래 환경질의 예측치들을 수록하게 되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관련 자료의 종합적인 정보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2)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 제 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UNEP에서 정의한 환경영향평가와 비슷하다.<sup>2)</sup>

---

2)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는 1987년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의 목표와 원칙”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발행위에 있어 계획된 대상사업에 의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 두 개념에서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미리 예측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개념은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 미국의 NEPA(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에서는 「인간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환경 설계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보고서 즉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을 명시하고 있어서 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을 소극적인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장점으로서는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로 사업의 경제성만을 강조하던 종래의 의사 결정 체계에서 환경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둘째, 사업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투자 확충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사업계획의 내용에 주민의 사가 반영되어 개발행정의 합리성이 제고 된다. 넷째, 평가내용의 공개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는 효과도 있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잘 살려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지금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 3)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sup>4)</sup>

---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유철상,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발전방향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환경처 평가제도과 「환경정책토론회 회의자료」, 1994.11.22, p.4.

4) 홍준석, “제주도 지하수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환경연구소 학술세미나, 「제주지하수 영원한 자원인가?」, 1999.3.24.

첫째, 심사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는 도지사로 되어 있다. 도지사가 사업 주체인 공공사업인 경우 평가서 작성자(사업자)와 평가서 협의기관이 동일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는 오히려 환경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결정 과정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비상설기구인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대상 사업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까지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려는 의도에 충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서 심사기관인 도지사와 직접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승인 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간접적으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내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허가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한 도지사가 승인 기관의 지위에 서기 때문에 사업자가 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도지사의 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가서 심사기관과 사업 승인 기관이 일원화됨으로써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다 확실하게 이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하여 1999년 3월 홍준식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그것 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수단으로서 가능성이 있다”<sup>5)</sup>고 해석하고 있다.

---

p.41을 참고하여 재정리.

5) 홍준식, “제주도 지하수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 학술세미나, 「제주지하수 영원한 자원인가?」, 1999.3.24, pp.41-42.

## 2. 교통영향평가제도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2조 6항)에 의하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 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무분별한 시설 입지를 지양하고 이를 이용자의 편의 및 도시 전체의 교통 소통 측면에서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해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 받은 사업 시행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중앙(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대상 사업계획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 결과에 대하여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심의필증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sup>6)</sup>

## 3. 재해영향평가제도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이 수립, 입안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가 지역의 치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피해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재해영향평가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재해 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법률 제4993호)하여 도입하였다.

6) 김황배·추상호,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96년 교통영향평가서 분석」, 교통개발연구원, 1998.2, pp.4-5.

7) 심재현, 「재해영향평가제 시행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p.25.

자연재해대책법 제 2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홍수 등에 의한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재해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6년 6월 21일에는 풍수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5033호)을 개정·공포하여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재해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내용, 평가서 작성 대행자의 자격,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그 후 재해영향평가제의 법적 뒷받침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 4. 지하수영향조사제도

제주도에서 지하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자원이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어떠한 자원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당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1995년 1월 5일 개정시 “지하수영향조사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제 15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도입·시행되었으며, 1998년에 들어 지하수법은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지하수영향조사제도는 사실상 지하수 개발 위치의 적정성, 개발규모의 적정성, 시공방법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 57조의 2에는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작성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다. 범위 규정은 negativie list<sup>8)</sup>로써 동 조례에는 지하수

---

8) 법 조항에 영향평가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범위내에 들어오는 사업의 경우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은 positive list라 하고,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를 예시해 놓고, 그외의 경우는 모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negative list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개별 영



영향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해 놓았고,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 조사를 받도록 해놓았다.

<표 3-1>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일 양수 능력 30m<sup>3</sup>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먹는 물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li> <li>② 국방·군사시설사업 또는 농·축·수산업, 학교 체육시설에 이용할 목적으로 1일 양수 능력 150m<sup>3</sup>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li> <li>③ 해안변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점에서 염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li> <li>④ 지하수의 조사·연구등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li> <li>⑤ 토지 굴착 예정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의 지역에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에 활용 가능한 지하수공이 없는 경우</li> </ul> |
|---|

지하수 영향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보면 <표 3-1>과 같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 57조의 2).

## 5. 경관영향평가제도

경관영향평가는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가 신설되었고, 1999년 1월 7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은 삭제되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제주도지사가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원래의 목적은 자치단체나 개발업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경관, 인문환경, 시각환경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 시행함으로써 개발과 조화되는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이나 시설물의 형성으로 제주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sup>9)</sup>

향평가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 positive list를 따르고 있으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영향 조사는 negative list를 따르고 있다.

9) 제주도, 「제주도개발특별법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1997.8, p.24를 참고하여 정리

경관영향평가 대상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녹지지역 및 관광단지 연면적 6,600㎡이상과 높이 15m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이 해당된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연면적 3,300㎡ 이상과 높이 12m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이 경관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절대·상대보전지역내 건축물인 경우는 연면적 660㎡이상이면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위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포함된 사업은 대상에 포함된다.

운영 방법은 대상 사업자가 평가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경관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초안 작성하고, 시·군에 접수시키면 공고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 반영 평가후 제주도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 6. 영향평가제도의 범위 비교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향평가의 범위는 개별 영향평가별로 다르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6조의 2 제 2호와 제 14조 제 3항에 따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심의규정”에 총 18개 분야, 64개 사업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28조에 따른 시행령 제 31조와 별표에 6개분야 17개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3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23개 사업, 24개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심의와 지방심의 대상사업을 달리 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관영향평가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14조 제 1항규정에 따른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다. 1999년 1월 7일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었지만 제주도의 경우 경관영향평가를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범위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인 경우 포함된다.

지하수영향조사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25조, 시행조례 제 57조의 2항과 지하수법 제 7조에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정 범위를 두고 그

---

함.

이상이 되는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표 3-2> 영향평가제도의 범위 비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6조의 2, 제 2호와 제 14조 3항에 따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심의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 28조에 따른 시행령 제 31조와 별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3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 별표 1.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14조 제 1항 규정에 따른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25조, 시행조례 제 57조의 2항과 지하수법 제 7조
총 18개 분야 64개 사업	6개 분야 17개 사업	23개사업, 24개시설 ※ 도시교통정비지역 (제주시, 애월, 조천), 도시교통정비지역 외(기타지역)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환경평가사업포함)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사업만 명기
① 도시개발 (12개) · 토지구획, 대지 조성,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주택 및 시가지 : 15만㎡ · 아파트, 도시계획,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 10만㎡ · 여객터미널 : 5만㎡ · 학교 : 30만㎡ · 하수종말처리시설 : 10만㎡	① 도시개발 (5개) · 토지구획, 대지 조성, 택지 개발, 아파트 지구개발, 주택지 또는 시가지 조성 사업 : 180만㎡	· 토지구획대지조성, 도시재개발, 아파트 지구, 시가지 조성 (주택, 공업용지) - 중앙심의(-) - 지방심의 : 도시(5만㎡), 도시외(50만㎡) · 택지개발 및 유통단지 - 중앙심의 : 300만㎡이상 - 지방심의 : 도시(5만㎡) 도시외(50만㎡) · 여객 및 화물터미널 - 지방심의 : 도시(시설 11천㎡, 부지 12천㎡) · 전문대학·대학·대학교 설립(연건축면적) - 지방심의 : 도시(10만㎡), 도시외(50만㎡)	① 건축물 및 공작물 ·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 관광지 - 연면적 6,600㎡ 이상 또는 높이 15m이상 · 도시계획구역외 건축물, 공작물 - 연면적 3,300㎡ 이상 또는 높이 12m이상(단 취락지구, 학교, 2층이하의 농·임·축·수산업시설 제외) · 절대·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내 - 연면적 660㎡이상 · 삭도시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상기 건축물 및 공작물이 포함된 사업 (64개단위사업)	· 지하수개발(굴착)·이용시 -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 국방, 군사시설, 농·축·수산업, 학교체육시설 : 150톤/일이상 ※ 단, 해안면 지적 경계선으로 반경 100m이내 지점의 염지하수 및 지하수의 조사·연구 목적의 토지굴착은 제외 ※ 토지굴착 예정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에 활용가능한 지하수공이 없는 경우는 사전영향조사를 받지 않고 사후영향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
② 산업입지(7개) ·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 중소기업단지, 수출자유지역, 공장설립, 공업용지 : 5만㎡ · 농공단지 : 10만㎡	② 산업단지조성(4개) ·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 공업용지, 농공단지 : 180만㎡	· 산업단지개발사업 - 중앙심의 : 500만㎡ - 지방심의 : 도시(20만㎡) 도시외(200만㎡)		
③ 에너지개발(6개) · 해저광업중 에너지개발 · 채광면적(30만㎡) · 전원개발, 전기설비, 발전소(1만Kw), 송전선로(154Kvm, 10Km), 옥외발전소(154), 회처리장, 저탄장 · 원자로건설, 저유시설				
④ 항만시설(3개) · 어항시설 : 외곽·계류(매립 1만㎡, 기타(15만㎡, 매립수반시 3만㎡) · 항만시설 : 기능(매립1만㎡, 기타(15만㎡, 매립수반시 3만㎡) · 항만준설 : 10만㎡, 20만㎡(항로등 유지준설, 오염물질제거시 제외)		· 항만건설(연간 하역능력) -중앙심의 : 600만톤 이상 -지방심의: 도시(150만톤) 도시외(300만톤)		
⑤ 도로건설(3개) · 도로신설(4Km, 폭25m) · 도시계획(지하도1Km) · 2차선이상 도로(10Km확장)		· 일반국도 -중앙심의 : 30Km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교차로 및 타간선도로와 접속부 -지방심의 : 20Km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교차로 및 타간선도로와 접속부 · 지방도 : 10Km이상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로 및 타간선도로와 접속부 · 도시계획도로:5Km이상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로 및 타간선도로와 접속부		
⑥ 수자원(2개) · 저수시설 및 댐 또는 하수연 : 저수용량 30만㎡이상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
⑦ 공항건설(3개) · 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		· 공항의 설치(연간 여객처리능력) -중앙심의 : 500만명 이상 -지방심의 : 도시(30만명) 도시외(100만명 이상)		
⑧ 하천개발(2개) · 하천공사(5Km) · 복개(33천㎡, 1Km)				
⑨ 체육시설(5개) · 청소년수련시설 수련지구 : 30만㎡ · 경륜시설, 경마장, 25만㎡(스키장, 자동차경주장 포함)	③ 체육시설 · 체육시설 : 30만㎡ (골프장18홀이상)			
⑩ 관광지 개발(6개) · 관광사업(5만㎡) · 관광단지, 온천개발, 도시공원, 유원지 : 10만㎡ · 묘지공원(25만㎡)	④ 관광지개발(3) · 관광사업, 관광단지, 온천개발 : 30만㎡	· 관광지(시설계획지구면적) -중앙심의:300만㎡이상 -지방심의:도시(20만),도시외(200만) · 온천개발 -중앙심의:300만㎡이상 -지방심의:도시(5만), 도시외(50만) · 공원건설 -지방심의:도시(20만),도시외(200만) · 유원지 -지방심의:도시(15만),도시외(200만)		
⑪ 폐기물, 분뇨처리(2개) · 분뇨처리시설(50kl/일) · 일반매립(10만㎡, 100만㎡), 특정매립(1만㎡, 5만㎡), 소각시설(100톤/일)		○ 기타사업 · 지역개발 및 복합단지 조성 -중앙심의:300만㎡이상 -지방심의:도시(5만),도시외(50만) · 민자유치사업 -중앙심의:300만㎡이상 -지방심의:해당사업 ·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 -지방심의:도시(5만),도시외(50만) · 기타법률에 의거 시행되는사업 -중앙심의:300만㎡이상 -지방심의:도시(75천),도시외(750천) · 단일용도의 시설물 24개 사업		
⑫ 육상어류양식장 · 육상양식, 종묘생산어업 : 1만㎡(시설 5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지 하 수 영향조사
⑬ 매립 및 개간(2개) · 매립:10만㎡(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1만㎡) · 개간(간척포함):50만㎡				
⑭ 산지개발(4개) · 묘지(25만㎡) · 초지조성(30만㎡) · 채석,채토(10만㎡) · 기타(15만㎡,보전임지1만㎡)	⑤ 산지개발(3) ·묘지, 토석 또는 광물채취, 기타 산림형질변경 : 30만㎡			
⑮ 국방·군사(3개) · 국방·군사시설(33만㎡), 군용항공기지 [비행장, 활주로(500m), 기타(20만㎡)], 해군기지(10만㎡, 다만 매립수반시 3만㎡)				
⑯ 골재채취 · 골재채취(5천㎡) · 산림, 육상(10만㎡) · 보전임지(1만㎡)				
⑰ 레미콘,아스팔트제조 · 부지면적(5천㎡)				
⑱ 삭도·궤도건설 · 외출궤도포함(2Km)				
	⑥ 우수지 매립 · 도시계획시설중 우수지시설 변경 10만㎡			

일반적으로 볼 때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경우는 모든 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는 재해영향평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향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 모든 사업이 영향평가를 통합해서 받아야 할 사업은 아니겠지만 2개 이상 중복해서 받는 경우는 많게 된다.

## 7. 우리나라 영향평가제도 운영 실태

본 연구에서 살펴본 환경영향평가, 교통, 재해, 경관, 지하수영향평가는 모두 개별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1996년 12월이후 환경·경관·교통·지하

수영향평가에 따른 통합영향평가가서 작성 운영지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인 경우 일정 범위 이상의 사업은 중앙심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부분적인 통합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1) 우리나라 영향평가 실적

지금까지 살펴본 개별 영향평가제도를 다음 <표 3-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3> 각종 영향평가제도 운영 비교

구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주도개발 특별법, 지하수법
주관부처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평가서 검토기관	· 환경부 : 국가 및 대규모사업 · 지방환경청 : 지자체 및 민간사업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건교부 : 대규모사업 · 시도지사 : 소규모사업 - 중앙(20인), 지방(15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행정자치부 - 재해영향평가위원회(11인)	· 제주도 - 경관영향평가위원회	· 각 시·도지사 · 제주도 - 수자원개발사업소
시행연도	1982년	1987년	1996년	1995년	제주:1996년 전국:1998년
대상지역	전국	전국(상주인구 10만이상 시·읍지역)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대상사업	18개분야 64개 단위사업	23개 단위사업 및 24개시설	6개분야 17개 단위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공작물 및 64개 단위사업	지하수개발사업
평가심의 실적	1,723건 (1982-1997)	4,014건 (1987-1997)	21건 (1996-1997)	72건 (1995-1997)	48회 206건 (1996-1997)

주) ① 경관영향평가 폐지법안이 1999년 1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됨.

② 유충렬,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영향평가제도들 종합적이고 실효성있게 통합하여야,” 월간 「교통」, 1992. 2을 참고하고 지하수 영향조사를 첨부하여 재작성.

최근 1997년 말까지의 실적을 살펴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1982년부터 시작해

서 1,723건을,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부터 시작해서 4,014건, 재해영향평가는 1996년부터 시작해서 21건, 경관영향평가는 1995년부터 시작해서 72건, 지하수영향평가는 1996년부터 시작해서 206건을 실시했다.

## 2) 제주도 영향평가 실적과 통합영향평가 실적

그 동안 제주도내에서 시행된 평가 실적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52건, 경관영향평가 85건, 지하수영향평가 61회 259건, 교통영향평가 49건, 재해영향평가 9건이다. 연도별로는 <표 3-4>와 같다.

<표 3-4> 연도별 제주도의 영향평가 심의 실적

연도별	계	환 경	경 관	지하수	교 통	재 해
계	454건	52건	85건	61회 259건	49건	9건
1993	5건	-	-	-	5	-
1994	3건	1	-	-	2	-
1995	54건	17	24	-	13	-
1996	145건	13	23	18회 100건	9	-
1997	157건	9	27	30회 106건	12	3
1998	90건	12	11	13회 53건	8	6

주) ① 1994년이전 환경부 협의 실적으로서 탐동공유수면 매립 등 24개사업이 있음.

② 제주도, 환경정책과 내부자료, 1999.1.

이러한 실적 중 중복평가 혹은 통합평가로 실시했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 이 <표 3-5>은 통합평가를 실시할 때 통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수를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표에 따르면 '94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1건이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와 중복되어 중복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중복으로 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95년도에는 17건 중 6건이며, '96년도에는 13건 중 8건, '97년도에는 9건 중 9건, '98년도에는 12건 중 4건이었다. 특히 '98년도에는 중복된 4건 중 3건은 환경·경관·지하수·교통·재해 영향평가 즉 5개의 영향평가를 모두 받은 사업들이었다.

따라서 50%이상은 둘 이상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그 실익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중복평가 실시 현황('94-'98, 환경영향평가 기준)

연도별 협의 실적	내용
계	총 52건 중 28건(54%)
'94년도 1건 중 1건	- 환경·교통 : 1건
'95년도 17건 중 6건	- 환경·경관 : 2건 - 환경·교통 : 2건 - 환경·지하수 : 1건 - 환경·경관·지하수 1건
'96년도 13건 중 8건	- 환경·교통 : 1건 - 환경·경관·지하수 : 2건 - 환경·경관·지하수·교통 : 3건 - 환경·경관·지하수·교통·재해 : 2건
'97년도 9건 중 9건	- 환경·경관 : 3건 - 환경·교통 : 1건 - 환경·경관·지하수 : 1건 - 환경·경관·지하수·교통 : 1건 - 환경·경관·지하수·교통·재해 : 3건
'98년도 12건 중 4건	- 환경·경관·지하수 : 1건 - 환경·경관·지하수·교통·재해 : 3건

## IV.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 1. 미국 환경영향평가제도

미국은 1969년 국가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한 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세계 최초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발 시행했다. 현재 27개주 2개 자치구에서 “Little NEPA”(Littl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라고 불리우는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환경성검토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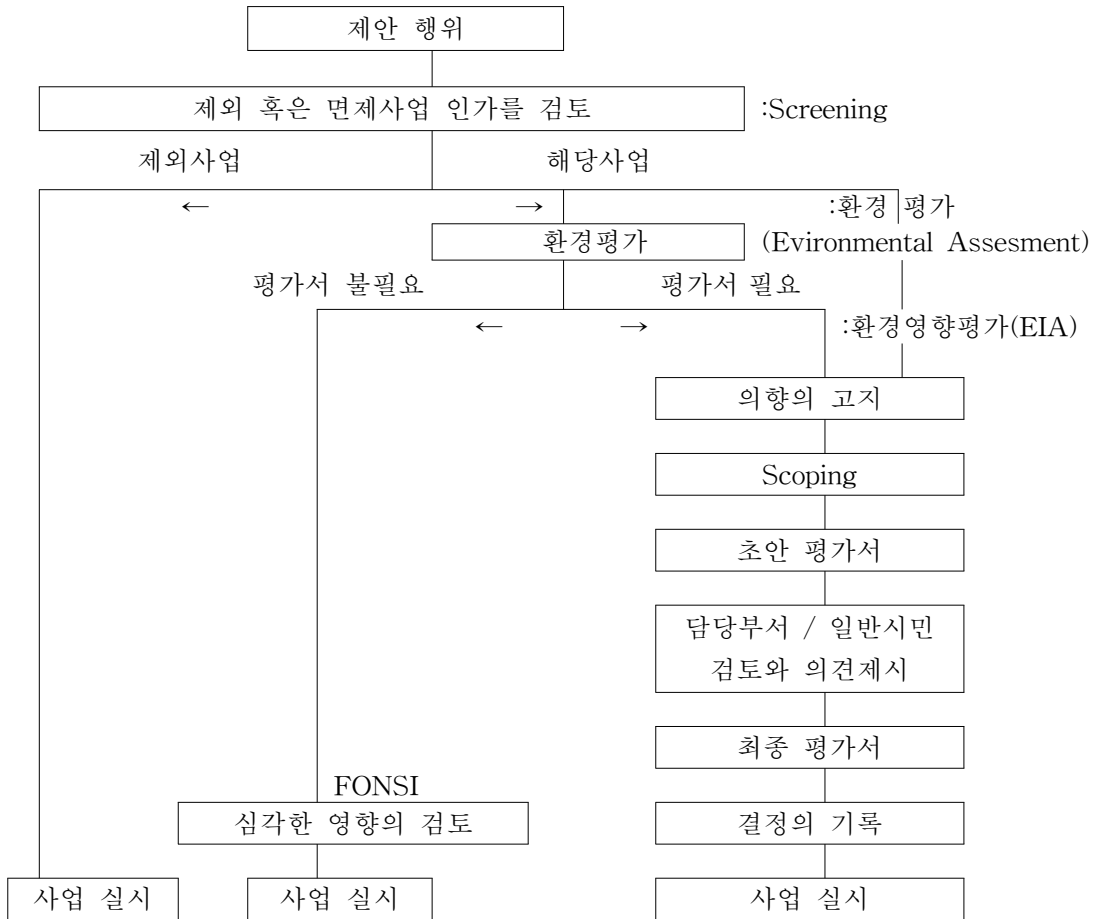
미국의 환경영향평가는 건설성, 주정부에 대상 사업과 평가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만 평가서 작성시는 보통 스크리닝(Screening) 과정과 스코핑(Scoping)을 통해서 결정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주관 관청의 결정, 환경평가의 주민에 대한 고지·스코핑 과정의 실행, 초안 평가서의 작성, 검토를 위한 초안 평가서의 배포, 만약 요구되거나 원하는 경우 공청회의 개최, 최종 평가서의 작성, 최종 평가서의 배포, 문서화, 최종 평가서의 채택, 관청의 결정, 결정의 기록 작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안된 사업에 대한 주관 관청이 결정되고,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 당해 사업이 제외 혹은 면제 사업이 아닐 경우, 환경평가(EA : Environmental Assessment)를 거치게 된다. 환경평가 결과 “인간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지 않는 사업”으로 결정되면 왜 환경영향평가서(EIS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작성이 요구되지 않는 지를 간략히 설명하는 ‘환경영향평가 예외사업 설명서’(FONSI : Findings of No Significant Impact)를 작성하게 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은 다음 <그림 4-1>과 같다.<sup>11)</sup>

10) 한상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환경관리인」, 1995.9, pp.15-16.

<그림 4-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그림 4-1>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은 Screening 과정과 Scoping,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예외사업 설명서’(FONSI)라고 할 수 있다.

11) Ronald E. Boss & Albert I. Herson. 「Mastering NEPA : A step-by-step Approach」, SOLAND PRESS BOOKS, 1993, p.15 / 한상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환경관리인」, 1995.9, p.16.

## 2. 영국 환경영향평가제도

영국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책정과 그것에 기준을 둔 개발규제 등의 사무는 도시·농촌계획법에 의해 주로 郡(county)과 市(district)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어 동법의 규칙에 환경영향평가서 수속 절차가 정해져 있다. 한편 간선도로, 발전소 등의 사업에 관하여서는 간선도로법, 전력법 등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중앙정부가 스스로 인·허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관계된 환경영향평가의 수속 절차는 각각의 법의 규칙에 위치가 정해져있다. 실시 건수가 많은 도시·농촌계획규칙에 기초를 둔 환경영향평가의 수속 절차는 개발 규제에 관련된 지방계획국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sup>12)</sup>

## 3. 프랑스 환경영향평가제도

프랑스는 1976년 자연보호법 및 1977년의 동법시행령에 따라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법제도이다. 프랑스의 제도는 공공사업, 공공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민간사업,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수속을 면제할 수 있는 것, 간단한 환경영향평가서로 할 수 있는 것,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분류하고 있다.

## 4. 캐나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캐나다는 1992년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수속 절차는 간단한 평가를 실시하는

12)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특징은 고창훈·강영훈, “한국과 주요 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 정책」, 제3호, 1997, pp.70-71에서 인용.

class screening 수속 절차를 이행한다. 그리고 평가서의 내용을 제 3자인 조정인과 위원회에서 공개심사(public review) 수속 절차, 평가서 등의 관련문서·정보를 공개하는 공개 등록대장 설치, 주민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금을 창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5.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제도

네덜란드는 EC지령을 받아 환경정책에 관한 인·허가 등의 규정을 집성하는 형태로 작성된 환경관리법의 일부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규정되었다. 1987년에는 대상 사업·인허가 등을 정한 환경영향평가령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제도는 각각의 사업마다 조사의 범위를 나타내는 Scoping guideline이 주민의 참여하에 작성된다는 점, 평가서의 정보가 충분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독립된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4년에는 환경관리법, 환경영향평가령이 개정되어 Screening 수속 절차가 도입되었다.

## 6. 외국 영향평가제도의 특징

지금까지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각 나라마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중 특징적인 부분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로부터 참고할 사항은 Screening 과정을 뚫으로써 전략환경평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있는 것과 Scoping제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 '환경영향평가에 외사업 설명서'(FONSI)라고 할 수 있다.

② 영국의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환경영향평가법을 별도로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각각의 다른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개별법의 내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부서도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각기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 교통, 지하수, 재해, 경관영향평가를 다른 정부 부처, 다른 부서에

서 이행하는 것과 유사한 운영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③ 프랑스의 특징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로 할 수 있는 사업, 상세한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④ 캐나다제도의 특징은 공개 심사와 정보의 공개, 주민 참가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창설하고 있다. 주민 참여를 우리나라처럼 읍·면단위에만 보고서를 비치한다든가, 지역주민의 범위를 한정하여 참여토록 하는 등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의 비용을 보전할 정도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

⑤ 네덜란드제도의 특징은 각 사업마다 조사의 범위를 나타내는 Scoping guideline이 주민의 참여하에 작성된다는 점이다.

## V. 우리나라 개별 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법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나 개별 환경영향평가의 진행 과정을 직접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양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수집·분석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2차 자료인 신문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 신문은 PC통신 검색이 가능한 중앙 일간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지방일간지 제민일보, 관련 전문지 교통신문, 환경산업 신문을 선정 했다.

분석 내용은 1993년 이후 보도된 내용 중 검색용어 “영향평가”를 통해서 검색된 내용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대상 신문 보도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문제점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요약한 것은 부록에 첨부하고, 본문에서는 그 내용들을 유형별로 요약 정리했다. 재해영향평가나 지하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에서 지적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 1.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가운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적 이 가장 많다. 이 제도가 가장 먼저 시행되었고(1982년), 환경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대상사업들이 대형사업이어서 민원의 파장이 컸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제기되었던 문제는 대상 사업은 기정사실화 한채 소극적인 오염 저감 방안에 한정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의 적정 규모, 최적 입지, 다른 대안의 비

교 검토등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5-1> 환경영향평가의 취지 및 목적

- 대상사업은 기정 사실화한 채 오염 저감 방안의 수립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제도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임.(중앙일보, 96. 7. 14)
- 사업의 적정규모, 최적입지, 다른 대안의 비교 검토 등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홀히 다루지고 있음.(중앙일보, 96. 7. 14)

<표 5-2> 환경영향평가의 시기

- 「썩은 물」 방류로 국가적인 환경 현안으로 등장한 시화호 방조제(12.7km)가 착공된 것은 87년 6월, 그러나 이 방조제 축조가 주변 해안 및 내륙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보다 4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완료됐음.(중앙일보, 96. 7. 14)
- 평가대상인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등은 사업 착수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합격증을 받고 공사 한 것인데도 환경 점수가 모두 낙제점이어서 그 밖의 사업은 환경 파괴에 無대책임을 알게 했음,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실시, 사후관리 등 세 단계에 걸쳐 각각 점수를 매겨 합산했다’고 밝혔음.(중앙일보, 95. 5. 28)

환경영향평가 시기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시화호 방조제의 경우 사업이 착공된 4개월 후에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점,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는 사업착수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시기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사업 착수 전에 시행되더라도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인 바,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사업 착수전, 혹은 계획 전에 실시하는 방안과 동시에 그 내용을 충실히 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3>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총 용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기준을 따를 경우 현재 단일 규모로 9만평이 넘는 체육시설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중앙일보, 97. 9. 22)
-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어떤 사업의 총체적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중앙일보, 96. 7. 14)
-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적용토록 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음. 예를 들면 토지구획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은 30만㎡ 이상, 아파트 개발은 25만㎡이상, 공업단지 조성은 15만㎡이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음. 따라서 대단위 개발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면적을 고의로 분할, 시행하는 눈가림 편법을 쓰고 있음.(동아일보, 95. 12. 5)  
 실제, 1992년 창원시 성원토건과 대동주택의 경우 30만㎡의 택지를 공급받아 9천여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2개의 법인으로 구분해 추진함으로써 영향평가를 받지 않음.(조선일보, 94. 8. 20)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따르면 「산림안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훼손 면적이 10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 면적이 실제 10만㎡를 넘는다고 해도 여러 업체에서 사업을 벌여 한업체 당 개발사업 면적이 10만㎡가 되지 않는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실례로 表善면 細花리의 일명 굽부리지역에는 네 개의 업체가 밀집되어 총 24만 5천여㎡를 대상으로 석재·골재 채취 작업을 벌이고 있음. 그러나 각 업체별로 사업 면적이 10만㎡미만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음.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제민일보, 96. 9. 19)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 사업장 면적을 분할하여 개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기피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대상 사업과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표 5-4>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구간별로 동일한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일본 신칸센 기준을 적용했다가 나중에는 프랑스 TGV 기준을 적용하는 등 평가방법이 제각각인데다 소음 저감 방안이 불합리해서 재평가 명령을 받음.(중앙일보, 97. 10. 20)
- 대구-춘천을 잇는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ppm의 청정지역인 인근 충북 제천군 용담천의 오염이 우려되는데도 강원도 원주시 부근 치악산 휴게소의 오수처리기준을 지나치게 높은 15ppm으로 협의해 줬다는 지적을 받음.(중앙일보, 97. 10. 20)
- 방조제 축조시 구조물 안정 구간을 지정하지 않은 새만금간척사업 지적 받음.(중앙일보, 97. 10. 20)
- 건축물을 도로와 직각 배치하도록 협의해 준 서울 목동지구 등 9개 민간 택지개발사업은 각각 부실 평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음.(중앙일보, 97. 10. 20)
- 아산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온천수 가열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평가서의 검토 부분이 미비해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지시함.  
91년 충남 아산온천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 와 협의하면서 인근 도로변에 녹지를 만들도록 했으나 1백 46억원의 비용이 들어가자 아예 녹지를 조성하지 않음.(중앙일보, 97. 10. 20)
- 개발이 제한된 녹지를 개발 가능한 인공 조림지로 한 경우 있음.(중앙일보, 97. 10. 20)
- 이미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상수원 지역을 골재 채취 계획에서 삭제된 지역으로 보고하는 등 허위 평가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남.(중앙일보, 97. 10. 20)
- 환경노동위원회의 1996년 7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89년 삼화환경관리(주)가 작성한 경기도 곤지암그린힐·여광골프장의 경우 65개 항목 중 71%인 46개 항목이 똑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평가서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수치만 몇가지 바꾼 때문」이라고 주장했음.(중앙일보, 96. 7. 14)
- (주)창신종합엔지니어링은 경북 성주 외동 냉천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수질, 대기분야, 측정 자료를 다른 사업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1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았음.(중앙일보, 95. 10. 12)

- (주)대우엔지니어링과 (주)금호엔지니어링은 논문 등을 표절하는 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각각 경고조치 됐음.(중앙일보, 95. 10. 12)
- (주) 금호엔지니어링은 기상 자료를 상당부분 서로 베끼는 등 조사 대상 비교 대상 61개 항목중 44%인 27개 항목이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음.(중앙일보, 95. 10. 12)
- 영월관광온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남광엔지니어링은 2001년 이후에나 가동될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 기간을 '94-'96년으로 예상, 오수(汚水)를 이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중앙일보, 95. 9. 28)
- 환경부에 따르면 대우그룹의 학교법인인 지성학원은 거제도 송진포 일대에 18홀짜리 아도니스골프장을 조성하기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 6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제출.  
지성학원은 송진포가 천연기념물 330호이며 유엔이 정한 멸종위기 야생종인 수달의 서식처인데도 환경평가서 초안에서 「수달이 살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해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지성학원측에 보낸 검토 의견서에서 「거제도 일대에는 수달 등이 서식하고 보호철새인 아비의 도래지가 있다」면서 「보호야생종의 생태 현황을 조사한 뒤 개체 수와 서식지 보호대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함.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은 4일 환경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멸종 위기종인 수달의 서식처를 파괴할 수 있는 골프장 건설에 반대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겨레신문, 98. 9. 4)
- 경성대 조류연구소가 최근 '90-'96년 부산지역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가운데 20권을 조사한 결과 완전한 평가서는 한권도 없었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개 항목의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이행한 것은 1권뿐. 해운대 신시가지건설사업 평가서는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표범, 호랑이를 포함한 22종의 포유류에 건설사업이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돼 있음. 화명 3지구 택지개발사업 평가서는 생태계 변화를 그림으로 곁들여 「독극물이 든 먹이를 먹은 늑대, 여우 등이 중독사해 환경파괴가 일어났다」고 설명함. 늑대, 여우는 우리나라에서 멸종 상태임.(동아일보, 98. 2. 25)
- 국회 환경위 신계륜(국민회의)의원 지적 : 평가대행사인 S사가 전혀 다른 골프장개발사업 2건에 대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2권을 제시. 전혀 다른 날짜에 별개의 지형에 대해 평가가 실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압 시간대별 풍향 등 기상 상태는 물론 환경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과 결론도 문구하나 차이없이 똑같다고 지적.(동아일보, 95. 10. 11)

- 정장현의원(민자)은 「현재 전국에서 89개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올해 8월까지 이 가운데 55개 업체가 65차례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동아일보, 95. 10. 11)
- 원혜영의원(민주)은 「고양 능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실제 평가서 작성을 무자격자가 해놓고 명의만 도용했다」고 주장.(동아일보, 95. 10. 11)
- 울산시 울주군 온산면에 건립중인 한국티타늄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분적으로 조작된 사실이 환경부에 의해 확인됨. 환경부 회신에 따르면 한국티타늄과 환경평가대행업체들은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을 적게하기 위해 병커C유 사용량을 10kl/HR에서 0.77kl/HR로 줄여 평가서를 작성했다가 말썽이 나자 뒤늦게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조선일보, 95. 7. 3)
- 제주도 탐동해안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안전 부문을 도외시함으로써 사망 사고와 재해가 발생, 또다른 용역을 해야하는 결과를 초래케한 대표적인 부실 용역으로 꼽히고 있음.(제민일보, 95. 8. 3)
- 이덕희 하와이 호놀룰루시 지역개발자문위원은 제주도내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대부분이 구체성이 결여된 채 막연한 설명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자료의 단순 인용으로 평가서가 실증적이기 보다 형식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음.  
 특히 사업시행자가 사후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체로 된 것은 잘못이라며 앞으로 제주도에 독립기관으로 환경영향을 조사, 점검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제기함.  
 이위원은 해안선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해안선의 변화과정을 조사하지 않는 중요한 허점을 보였을 뿐 아니라 해안선 변화에 대한 조사 언급이 전혀없다고 밝히고 있음.  
 준설탁토 처리와 관련, 평가서에 「잔토 처리 대책이 요구된다」고만 서술,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않는등 잔토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도 무시하였다고 지적함.  
 상기, 지형·지질, 동·식물상, 해안환경, 생활·사회·경제환경 등 설명 역시 세밀한 서술이나 지도조차 포함되지 않는등 애매한 진술이나 막연히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음.  
 전문 용어 사용에 대해 설명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 시민을 위한 평가서라기 보다 작성자들이 편리한 대로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음.  
 어긋나는 도표와 그림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것은 강조되고 필요한 것은 잘 읽을 수 없도록 축소됐다고 주장했음.(제민일보, 96. 10. 25)

- 중산간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지 기상 조건이 판이한 濟州기상대나 西歸浦관측소의 기후를 대입,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초래하고 있음.

濟州道の회 내무위원회 환경국 업무보고에서 朴喜秀의원은 「지난94년 10월 경일기술공사가 濟州道에 제출한 제1산록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仁川측후소의 위치가 濟州관측소의 위치로 표기됐고, 10년간의 기상 현황도 仁川과 유사하고 濟州와는 다르다」고 밝힘.(제민일보, 96. 3. 18)

- 구좌읍 동북리 산림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와 서귀포시 강정유원지 평가서의 일부 내용이 똑같이 말썽을 빚음.

환경 조건이 서로 다른 중산간과 해안, 두 지역의 식생조성표·식물현존량등이 완전히 동일하게 작성됨.

25일부터 주민 열람중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보고서) 일부 내용에도 이와 같이 부실한 내용이 작성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주)K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이 평가서에 의하면 중문 2단지 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반경 약3.75km)의 식물상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난 3월 초순 3일간에 걸쳐 실시했다는 것. 그 결과 이 해안지역에는 식물종류가 3백 53종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 가운데는 해안지역의 식생을 대표하는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한라산의 고산식물과 외래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게 도내 학계의 시각임.

눈향나무·주목·팥팥나무·갈참나무 같은 고산식물 뿐만 아니라 일본잎갈나무·섬향·과초·은백양·미류·버즘나무등 외래수종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제민일보, 95. 8. 2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문제점 중에는 보고서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적용해야 할 기준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거나 변경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많은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본 신칸센 기준이 프랑스 TGV 기준으로 바뀐 것,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시 오수처리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고 있고, 개발이 제

한된 녹지를 개발 가능한 인공조림지로 바꾸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지역을 평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수치만 몇가지 조작하거나 지역명만 바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쓴 것들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 이후에 가동될 계획으로 있는데 해당 사업기간이 94-96년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다. 수달이 서식처인데도 수달이 살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는가하면 해운데 신시가지 건설사업평가서에는 살지도 않는 표범, 호랑이에 대한 영향을 기술하기도 했고, 독극물이 든 먹이를 먹은 늑대와 여우 등이 중독사해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과정을 예시함으로써 멸종상태인 동물들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도 탐동매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안전부문을 도외시했던 점, 인천측후소의 위치가 제주관측소로 표기되었던 점, 구좌읍 동복리 산림골재채취에 따른 보고서와 서귀포시 강정 유원지 평가서 내용이 똑 같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중문 2단지 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고산식물과 외래종들을 포함해 보고했는데, 실제로 식재된 외래종을 조사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볼 때 타지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모사하는 일이 심각하며, 의도적으로 기준을 왜곡시키거나 고려해야 할 요소를 등한시하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표 5-5>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 감사원이 '96년 11월 국책사업을 포함한 전국 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44개 사업장에서 평가서 부실 작성과 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등 모두 70건을 적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림.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협의 소홀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18건, 평가 협의 없이 사업시행 9건, 평가서 부실 작성 7건 순으로 집계됨.(중앙일보, 97. 10. 20)
-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대행자 배제 범위에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설계·시공·타당성 보고서 작성 업체도 포함되어야 함.(중앙일보, 96. 7. 14)
- 환경부에 따르면 강원도 속초 청초호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조류관련 조사를 패류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작성, 1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았음.(중앙일보, 95. 10. 12)
- 올들어 8월말까지 전국 89개 대행업체중 62%인 55개가 전문인력 부족·무실적 등 법규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음.(중앙일보, 95. 9. 28)
-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원혜영의원과 신계륜의원의 지적한 바.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한 월악산 국립공원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자격이 없는 (주)유중엔지니어링이 사업자인 (주)월악리조트와 평가 계약을 한 뒤 대행자격이 있는 한국환경기술연구소에 하도급을 준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조선일보, 95. 10. 11)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이 사업기관의 계열회사인 경우이거나, 기존에 설계·시공·타당성 보고서 등을 작성했던 업체들이 대행기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비전문가를 전문가로 위촉하는 일, 전문인력의 부족, 대행자격이 없는 업체가 주계약자가 된 후 대행자격이 있는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일이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의 문제에서 지적되었듯이 평가대행기관들이 보고서를 작성 할 때 다른 보고서를 모사하는 것도 대행기관에 관한 문제이다.

<표 5-6>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의 경우 환경기초시설을 갖춘 다음 실시하라는 평가협의를 무시돼 결국 썩은 호수가 됐음.(중앙일보, 96. 7. 14)</li> <li>· 문체부에서 지난해 1월 승인한 강원도 원주시 월송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행자인 H개발이 환경청에 설치하겠다고 한 하류 문막상수원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었음.(중앙일보, 97. 10. 20)</li> <li>· 한국도로공사는 '90년부터 시공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중 산림 보전을 위해 터널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소래산구간을 절개공법으로 착공하다 민원이 발생하자 '96년 다시 터널공법으로 재시공한 것으로 밝혀짐.(중앙일보, 97. 10. 20)</li> <li>·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관내 91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40%인 36곳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협의 내용 미이행 사업중 81%인 29개 사업의 시행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인 것으로 밝혀졌음. 기관별로는 해운항만청과 부산시가 각각 7곳으로 가장 많고 토지개발공사 3곳, 경상남도·울산시·수자원공사 각각 2곳 등임.(중앙일보, 95. 9. 28)</li> <li>· 공단조성 골프장 건설 택지개발 등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2백 15개 대형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57%인 1백 23개 사업장에서 협의 내용을 무시함.              청초호 유원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청초천 교량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됨. 고흥-벌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주변에 고인돌이 30여기나 무리지어 있음에도 문화재로서의 보호를 위한 조치없이 공사를 진행해 역시 적발됨. 또 곤지암 그린힐골프장건설사업은 용도지역 변경 조치가 없이 무단으로 3만여평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해 토치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됨.(조선일보, 97. 8. 10)</li> </ul>
--

협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개발사업자의 임무다. 시화호의 문제는 협의 내용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일어난 것이다. 월송관광단지조성사업의 경우도 협의 내용을 무시해서 오수를 그대로 방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1997년에는 대형사업 1백 15개 중 57%인 1백 23개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받았다. 이러한 지적은 1994년에도 40%나 해당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사업 중 반이상이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도 중요



하지만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표 5-7> 환경영향평가 운영 관리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도리의 이글네스로 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1월 당초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녹지보전을 34%에서 26%로 낮춰달라는 변경 신청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하고도 업체가 재차 신청하자 업체의 요구대로 승인해 녹지 23만㎡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음.(중앙일보, 94. 9. 28)
-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에 위치한 지산골프장 등 4개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는 ① 다이ना마이트를 사용해야 할 작업에 흑색폭약 사용 ② 암반지역에 조림 ③ 골프장 페어웨이 전체에 차수시설 설치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을 부여함. 이에 따라 불가능한 조건의 계속적인 이행 촉구로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력만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음.(중앙일보, 94. 9. 28)
- 감사원이 93년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가위원들의 검토 의견 회신율이 평균 36%에 불과함.  
 전체위원 42명 중 검토 의뢰를 받고도 1년동안 한번도 검토 의견을 내지 않은 위원이 6명이나 됨. 또 환경처 본부가 지난해 검토한 50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은 해당 지역 평가위원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위원들이 검토, 지역특성을 감안한 충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특히 춘천 의암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교수가 평가서의 심의위원에 배정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 있음.(중앙일보, 94. 9. 28)

환경영향평가 운영 관리는 운영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몫이다. 변경 신청에 불가 통보를 했다가도 재차 신청하자 요구대로 처리해준 경우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부여하고 계속적으로 이행 촉구함으로써 부담을 주는 경우도 지적 받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들의 문제로는 검토 의견 회신율이 평균 36%에 지나지 않는 점도 나타났으며, 전체위원 42명 중 검토 의뢰를 받고도 1년동안 한번도 검토 의견을 내지않은 위원이 6명이나 되었다. 또한 50개의 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20개 사업은 해당지역 평가위원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채 평가되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지적을 받았다.

<표 5-8>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무시

- 자민련 김용환의원은 '93년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이 시행한 대단위 개발사업 중 모두 8건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힘.  
해운항만청이 승인하고 군산항건설사업소가 사업 시행을 맡은 군장신항만 남측안벽 및 북측도류제 축조 공사는 '90년 8월 공사에 들어간 후 5년이 지난 '95년 5월에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 환경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림.(조선일보, 96. 10. 17)
- 한국도로공사는 대구-춘천간, 함양-진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 모두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음.  
한국전력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 영향평가와 동시에 착공했다가 환경부에 적발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전문용역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주시내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작함.  
인천시 남동구도 인천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영향평가 없이 착수했다가 중지명령을 받음.(조선일보, 96. 9. 25)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군산항 건설사업소가 담당한 축조 공사는 '90년 8월에 착공했으나 5년이 지난 95년 5월에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사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는가하면, 한국전력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지적받기도 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뢰 조차 하지 않은채 공사를 시작했고, 인천시 남동구도 토지구획정리사업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착수했다가 중지명령을 받는 일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의 협의 이행의 문제나 운영관리,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는 일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인 문제이전에 공공기관이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은 신문에서 보도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한계로써 지적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다. 평가기법의 완벽함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정보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다.<sup>13)</sup>

이외에도 미래의 환경 상태의 변화를 완벽하게 예측하기 곤란하다. 대안이 한정되어 있고, 대안의 가치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결여되기 쉽다. 환경가치의 객관화, 계량화가 어려워 대안간 비교가 곤란하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 수준과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이 본질적인 한계성으로 나타난다.<sup>14)</sup>

그리고 축적영향평가제도의 부재로 인해 누적되는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 여러 지역이나 여러가지 사업이 연결되어 일어나는 총체적 영향평가 부재로 인한 공간과 시간적인 문제,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어하기 어려운 점, 사회적 영향이나 문화적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전략영향평가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구상이나 계획단계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의 실시여부를 묻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 받고 있다.

## 2.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정리했다.

### <표 5-9> 교통영향평가 사업 범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산 북구 감전동 315번지 일원 3천평 규모 임대, 16개 매매업소 인 가받고 사업 시작됨,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받지 않음. 단일 사업장 규모에 한정하는 문제점.(교통신문, 94. 11. 28)</li></ul> |
|---|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13) 한국법제연구원, 「환경영향평가법 연구」, 1994, p.18.

14) 유철상, 전개논문, 1994, p.5.

<표 5-10>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 부산 가야로의 부산 롯데월드보고서의 예, 이 지역의 주요 교통체증 구간인 가야로의 교통 서비스 수준을 「교통흐름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설명,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음, 특히, 사업지를 통과하는 72개 버스 노선을 16개 노선으로 허위로 기재, 버스 정차대를 48m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작성함.(중앙일보, 95. 10. 9)
- 교통개발연구원이 '93년 중앙과 15개 시도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4백 83건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 주변 가로 서비스 수준 변화에 대한 분석의 누락 또는 불량인 1백 87건, 유발 대중교통 문제 분석이 제대로 안된 것도 3백 12건에 달하는 등 평가서 항목 전체 내용이 부실.(조선일보, 95. 10. 13)

보고서 중에는 허위 보고가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평가서 항목 내용 자체가 부실하게 된 경우도 많다. 사업지 주변 가로 서비스 수준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사업지 개발이 야기될 수 있는 대중교통에의 영향 등을 분석하지 않은 것도 있다.

<표 5-11>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 한국교통문제연구원이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겼는데도 변경 등록치 않아 1개월간 사업정지처분됨. (주) 금호엔지니어링, (주) 우성엔지니어링 등 3개업체도 주의처분을 받음.(교통신문, 94. 11. 28)
- 평가서 부실은 한국교통문제연구원과 동일기술공사등 소수 평가 기관이 무리하게 과도한 용역을 맡아 수행하는데 따른 필연적 결과며 실제로 이들 기관이 작성한 평가서도 신뢰성이 거의 없는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함.  
또 '93년 중앙심의회 통과 30건 중 11건이 심의 통과 이전에 사업이 착공됐다면서 지난해말 건교부 사후관리 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0건 모두 심의 조건 위반했음.(조선일보, 95. 10. 13)

일부 대행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소수의 업체가 많은 용역을 맡게 됨으로써 부실한 평가를 하고 있다.

<표 5-12> 교통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 경기도가 도의회건설교통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93년부터 '97년말까지 건설될 예정인 88개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을 지시하는 등 조건부로 통과시켜 승인했으나 이중 35%인 31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음.(중앙일보, 95. 11. 29)
- 교통영향평가제도가 '93년도부터 제주지역에 도입되었으나 평가 뒤 사후 점검 실적은 단 한차례도 없어 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동택지개발사업, 성지도매물류센터(E마트)등 50건의 사업과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이중 제주시 노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모두 8건이 준공됐음. 그러나 사후 점검한 실적은 없음.(제민일보, 99. 2. 19)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이행 정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88개 대형건축물에 대해 추후 보완을 지시했으나 35%인 31개 건축물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

제주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타 자치단체도 사후 점검을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은 비슷하다. '93년부터 '99년 2월까지 모두 8건이 준공되었으나 사후 점검한 공식 실적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표 5-13> 공공기관의 교통영향평가 무시

-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9건의 고속도로 및 국도 확장 공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됨. 적발된 공사 구간은 고속도로의 경우 경부선 청원-회덕간, 영동고속도로 원주-새말간이며, 국도는 전주-소양간, 진주-진성간, 예천-풍산간, 풍산-안동간, 구룡포-포항간, 왜관 인터체인지-대구간, 애월-신창간.(조선일보, 95. 9. 30)

제주도의 애월-신창간 국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한 경우가 많다. 특히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3. 지하수영향조사의 문제점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내용은 주로 제주도에 해당된다. 이 제도는 제주도에서 시작되었고(1996년), 최근예야(1998년) 전국으로 그 시행이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지하수영향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표 5-14>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

- 부실용역 사례는 지하수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북제주군에 1995년 제출된 지하수개발 관련 3개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종합평가 및 결과 내용은 불과 한 단락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않고 있음.(제민일보, 95. 8. 3)
- 최근 제출된 지하수개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종합평가 및 결과」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음.  
북제주군에 지난 2월 제출된 「(주)제주온천리조트 지하수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와 3월에 각각 제출된 「수원지구 말 기반정비 지하수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금악지구 제주도 지하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종합평가 및 결과 내용은 불과 한 단락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않음.  
결론 부문은 한결같이 「계획 채수량은 적정하고, 지하수위의 변화는 취수정 주변에 국한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표 및 지하 오염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음.  
이와 함께 「향후 깨끗한 지표 환경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회·경제환경에 대해서는 저해 요인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동어반복 내용 일색임.  
더구나 지하수 장기 채수와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 오염 저감방안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한 듯이 베껴쓰고 있는가 하면 해당 지하수의 수질 분석 결과만 다를 뿐 지역 개황을 비롯 환경영향조사, 예측평가 및 사후 환경관리계획 부문 등도 기존의 자료등을 활용한 짜깁기 인상을 주고 있음.

이처럼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지하수 개발사업이나 민간이 발주하는 지하수 개발 사업 할 것 없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대해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의 지하수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및 시행령에는 도내에서 지하수를 솟아나오게 할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굴착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지하수개발과 이용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제민일보, 95. 4. 12)

보고서 베끼기는 지하수영향조사에서도 나타났다. 1995년 제출된 영향평가서의 3개의 종합평가 및 결과 내용 부분은 한 단락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경우이든, 민간이 발주하는 경우이든 관계없이 보고서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홍준석은 「제주도의 지하수는 지하수법, 먹는 물 관리법 등의 지하수 관련법령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지하수의 굴착·이용시는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에는 지하수영향조사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개별 지하수 개발 project별로는 비교적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개별사업 하나 하나는 안전하고 적절한 개발일지 몰라도 이것을 집합적으로 본다면 지하수 함양량 보다도 더 많은 이용을 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15)</sup>라고 지적했다.

이는 제주도의 통합영향평가제도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즉 축적영향평가나 지역영향평가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5) 홍준석, "제주도 지하수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환경연구소 학술세미나, 「제주지하수 영원한 자원인가?」, 1999.3.24, p.40.

#### 4. 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 1) 제주도개발특별법 운영상의 문제점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경관영향평가 조항은 법 개정 때 삭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에 흡수되어 원래 경관영향평가의 취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경관영향평가와 관련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sup>16)</sup>

① 이미 준공된 기존 건축물과 경관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 및 공작물로서 연면적 또는 높이가 100분의 30미만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관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물이 3층은 4층으로, 5층은 7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연면적 100,000㎡인 경우 3,000㎡까지 증축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의 전체 매스(mass)가 변하고 형태가 달라지고 경관상 영향이 미친다해도 이에 대응할 수 없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제3호)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경관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기 전에 경관영향평가 심사를 받아야 되고, 법 제 11조에 의한 개발사업 승인 신청시 경관영향평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은 동사업 시행자가 단지내 전체 수용한 건축물, 공작물 마다 기본 설계후 경관영향평가를 한 후 현행 규정대로 가능하나 조성된 단지를 필지별로 제 3자에게 분양후 건축할 경우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하기가 곤란하다.(법 제 24조 제 1항, 법 제 11조, 조례 제 12조, 시행령 제 14조 별표2)

##### 2) 신문보도에서 도출된 문제점

---

16) 제주도, 「제주도개발특별법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1997.8, p.25참고하여 정리.



신문 보도에서 지적된 경관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5-15> 경관영향평가 범위

- 첫째,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종합개발계획은 건축물 경관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다르게 규정해 사업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즉, 특별법과 그 시행령은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높이 15m이상, 도시계획 구역밖의 지역은 12m이상일 경우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종합개발계획(건축물의 고도기준)은 체육시설 등 특수 건축물이나 싸이로 등의 공작물인 경우 녹지지역이라도 12m 이상이면 경관영향평가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경관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이 건축물 최고 높이로 설정됨으로써 다양한 지붕 형태나 입면 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특성에 알맞는 건축미관 유지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임.  
셋째, 도시계획 구역 외의 경관영향평가 대상 제외 시설물 범위에 공장 등 경제활동 주체 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임.(제민일보, 98. 7. 20)
- 최근들어 제 2산록도로에 대대적으로 전주 시설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관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지적이 나타났다.  
현행 경관영향평가 대상은 도시계획 구역안인 경우 높이가 15m이상인 것,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은 높이가 12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는 지표에서 최대 높이가 12m로 특별법의 이 규정을 벗어나고 있어 경관영향평가를 받지않아도 됨.  
서귀포시가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면서 전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 2산록도로에 세우고 있는 전주 역시 불쌍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으나 경관영향평가 대상은 아님.  
이 곳 전주 시설 공사 구간은 5.4km로 1백여개의 전주가 즐비하게 들어서 주변 경관을 망치고 있음.(제민일보, 97. 6. 7)

경관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종합개발계획에 규정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영향평가 대상이 건물의 높이에 따라 설정되어 지붕 형태나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공장이나 경제활동 주체 건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도시계획 구역밖의 경우 높이가 12m 이상 시설물인 경우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12m인 전신주 1백여개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경관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표 5-16> 경관영향평가의 주민 참여

- 도내 각 지역 공용기지국 건립에 따른 경관영향평가 주민 공람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는 10월 제주지역 26개소에 공용기지국을 건립할 계획으로 경관영향평가 초안을 마련, 주민들에 대한 공람에 들어갔음. 오는 14일까지 공람되고 있는 공용기지국인 경우 오름 정상부에 위치해 있는데다 취락지구와 인접한 곳도 없지 않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경관영향평가 초안인 경우 도내 각 지역 읍면사무소에 각 1부씩만 비치 됐을 뿐 해당마을 리사무소에조차 비치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공용기지국 건립에 따른 정확한 내용은 물론 주민 공람 사실조차 몰라 경관영향평가 주민 공람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제민일보, 97. 11. 13)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참여가 형식에 치우쳐있다는 지적이다. 경관영향평가 초안이 읍면사무소에 1부씩만 비치되었을 뿐이고 리사무소에 비치되지 않고 있어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5. 개별 영향평가 실시의 문제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sup>17)</sup> 이 지적은 교통영향평가에 한정해서 나타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현행 영향평가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가 각기 별도로 실시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7) 유충렬,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영향평가제도들, 종합적이고 실효성있게 통합하여야,” 월간 「교통」, 1992.2.

1982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는 교통, 경관, 재해, 지하수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1987년부터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분리 시행되었다. 1996년부터는 홍수 발생 등 재해위험 해소 차원에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제주도에서는 1995년부터 경관영향평가제도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에서 1996년부터 시행된 지하수영향조사는 1998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인구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둘째,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행정기관 창구가 다원화되어 있고, 중복적인 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평가 항목을 보면 교통, 인구, 지형, 수리 등 상당수 항목이 중복되어 있고, 평가서 작성 방법도 사업개요, 토지이용 현황, 지역개발, 현황조사 등의 분야가 중복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중복으로 과도·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만평 규모의 택지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1억 1천만원, 교통영향평가 1억원, 인구영향평가 4천만원, 재해영향평가 8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각각 소요된다.

그리고 조사 결과 환경·재해·경관영향평가의 주민 의견 수렴에도 건당 6-7백만원(신문 광고비용 등)이 소요되어 무거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별도의 법에 의거 각각 시행하므로 하나의 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등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교통 영향평가는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나 인구영향평가는 환경·교통영향평가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각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별도로 수행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사업자에게도 소요 비용·시간을 가중시켜(교통·인구영향평가는 의견수렴 절차 없음) 민원을 사고 있다.

다섯째, 각 영향평가 마다 대상 사업의 종류·규모를 달리 정하면서 그 적용 기준도 불명확하다. 교통영향평가에 있어 개별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단

지 조성시 심의와 건축 심의시(건축법 제 4조 및 건축조례)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별도로 심의하고 있어 중복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30만㎡, 교통영향평가 5만㎡, 재해영향평가 100만㎡, 인구영향평가 180만㎡ 이상을 각각 평가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개별 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충될 시 조정기능이 미흡하여 지연되거나 사업자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 VI.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추진 방향

### 1. 통합영향평가제도의 논의 과정

#### 1) 제주도의 통합영향평가제도 논의 과정

제주도의 경우 1995년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의 통합,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에 한하여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서 작성운영지침에 제시되고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6-1>과 같다.<sup>18)</sup>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던 상황에서는 적게는 246일, 많게는 267일 소요되었으나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한 후로는 적게 95일, 많게 116일이 소요되고 있다.

1997년 제주도의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 보고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통합영향평가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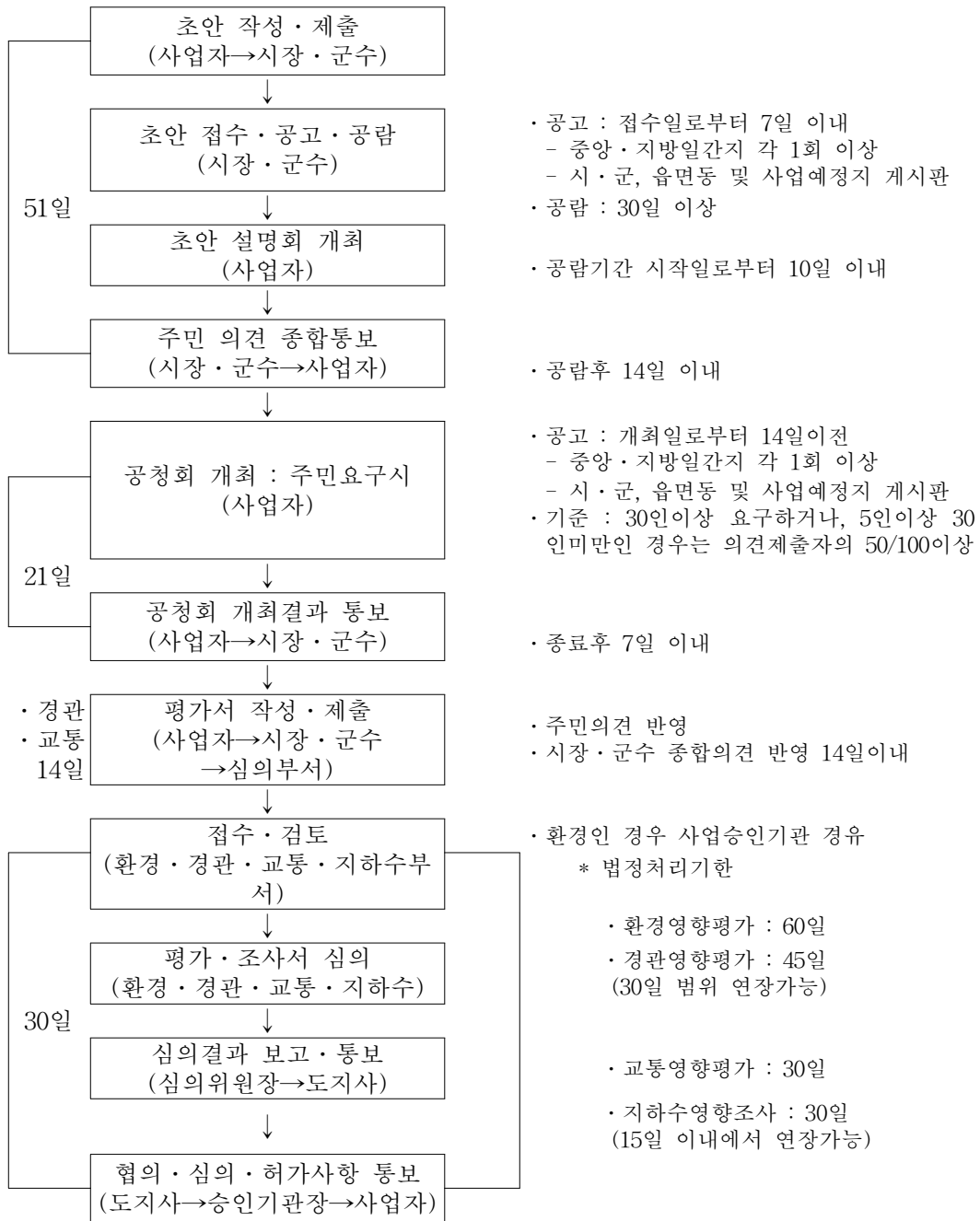
내용을 보면 재해, 인구, 교통, 경관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속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 목적은 비용 절감, 평가와 심의의 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이 업무를 환경부서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다.<sup>19)</sup>

1999년 1월 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월 5일 공포되었다. 개정 내용에는 기존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던 ‘경관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속에 포함되도록 되었다.

18) 제주도, 「환경·경관·교통·지하수영향평가(조사)에 따른 통합영향평가서 작성 운영지침」, 1996. 12. p.17.

19) 제주도, 「제주도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 1997, p.705, p.768, p.770, p.776, p.975.

<그림 6-1>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업무 처리 절차



\* 통합영향평가기간 : 95일 - 116일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된 제 24조(경관영향평가).

제 24조 (경관영향평가)

- ① 제주도에서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이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한 서류(이하“경관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기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관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는 폐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제 14조 제 1항 중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개발사업과 제주도에 설치하는 건축물·공작물 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기존에는 경관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해당 건축물·공작물인 경우 지금은 경관영향평가는 받지 않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의도가 경관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실제 해당 건축물·공작물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는 새로 정해질 것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1998년 8월에 입안되었다. 이 개정안은 1999년 7월 현재 국회에 제출을 앞두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유충렬,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영향평가제도들 종합적이고 실효성있게 통합하여야,” 월간 「교통」, 1992. 2, p.43.

제 13조(통합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등에 관한 특례)

- ① 사업시행자는 제주도(이하 ‘도’라 한다)안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 8조, 자연재해대책법 제 29조, 지하수법 제 7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경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재해·지하수(영향조사서)·교통영향평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작성(이하 “통합영향평가서”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영향평가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과 작성방법, 절차등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되 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 시행자 또는 승인 기관의 장은 제 1항의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 16조 내지 제 21조의 2의 환경부장관, 자연대책법 제 30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도지사로서 본다.
- ④ 도지사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통합영향평가의 실시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설비 등 등록기준,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에서는 통합영향평가를 추진할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권한에 대한 부분은 규정을 못하고 있으며, 경관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리조트개발과 관련하여 제주도 관광지 개발 정책방향 설정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허가 절차에서 환경, 경관, 재해, 교통, 지하수영향평가의 통합영향평가 실시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sup>21)</sup>

21)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제주도 관광지개발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토론회 자료, 1999.3.30, p.28.



## 2) 중앙정부의 통합영향평가제도 논의 과정

### □ 규제개혁위원회 방침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민의정부 국정과제」 자료에는 국정 100 대과제 중에 “환경·교통·인구·재해 등 유사영향평가의 통합 실시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sup>22)</sup> 즉, 현 정부는 통합영향평가제도운동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계획을 밝히고 있다.

1998년 11월 10일 제 7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 확정 과제의 후속 조치로 환경부는 4개 영향평가의 일원화를 추진해 2000년 1월부터는 단일 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인구·교통·재해 등의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종합검토로 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다는 논리이다.<sup>23)</sup>

규제개혁위는 평가의 실효성이 적은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소 규모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시·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주요 시설을 법적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되 제외되는 시설은 시·도 조례에서 통합영향평가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대상 범위 및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통합영향평가서는 분야별로 구분해 작성하되 중복부분은 공통으로 작성하고 평가 항목은 자연환경, 교통, 인구, 재해, 생활·경제환경으로 조정해 분야별 평가 부처를 지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가 절차는 각 영향평가 기관이 최종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던 것을 사업승인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통합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아

22) 기획예산위원회·정부간행물제작소, 「국민의정부 국정과제」, 1998, p.102.

23) 교통신문, 1999년 3월 8일자, 1면.

분야별 평가심의(협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통합영향평가의 심의 기간을 4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통합영향평가 추진 경위>

1. '97. 4. 23 제 1차 규제개혁추진회의
  -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개선을 경제활성화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2. '97. 10. 10 제 7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1·2단계로 구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 1단계 : 평가절차의 통합('97. 11부터 작업, '98. 7부터 시행)
    - 통합평가서 작성,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절차 통합
    - 제도일원화추진을 위한 「통합기획단」 및 「실무작업반」 구성 운영
  - 2단계 : 평가제도의 일원화('99년중 작업, 2000년부터 시행)
    - 평가대상사업 및 항목의 조정, 심사절차, 평가서 작성대행자 등 일원화
- \* '98. 2. 2 환경부주관 관계부처의 「실무작업반 (반장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및 「통합기획단(단장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발족
  - 실무작업반 중심으로 건교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 의견 조정 작업을 추진
3. '98. 4. 24, 규제개혁위원회(제2차)에서 '98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
  - '98. 2. 12 “국민의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결정
  - 환경부주관 실무작업반에서 3차례 회의 개최후, 관계부처 이견으로 '98. 10. 19 통합기획단에서 직접 조정 개선을 요청해 옴.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 '98. 12. 3, '99. 2. 4 전문가 및 부처회의 개최
  - 그간의 작업 결과 '97년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결정된 1·2단계별 추진은 관련 법령의 중복 개정과 규제 개혁 차원에서 미흡하므로, 절차 통합단계(1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평가제도 일원화로 추진하자는 의견 다수
  - '99. 2. 12 경제 2분과위원회 개선 방안 의결
    - 개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장기적으로 평가심의(협의)를 한 곳에서 전담할(one stop service) 「전문평가연구원(가칭)」의 필요성 제기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협의)권을 대폭 위임할 필요성

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승인권과 심의 기능을 과다 위임할 경우 견제기능 상실과 전문성 결여로 평가제도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확보와 통합영향평가제도 정착시까지 현행 위임 정도를 유지하되 시·도 조례로 확대되는 평가 대상의 심의는 시·도에서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9년 2월 26일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환경·교통·인구·재해 등 4개 영향평가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평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법] 등 4대 영향평가제도 관련법령(조항)을 폐지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가칭)]을 제정하여 1개의 영향평가제도로 통합·일원화한다.

둘째, 단위사업의 통합평가 대상범위를 각 영향평가제도의 목적·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평가대상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축소, 법정 의무평가 범위의 최소 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시설의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동일시설·규모라도 도시·지역별로 교통에 대한 영향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일률적인 평가대상 범위 설정 방식에서 교통영향이 강한 주요 시설에 대해서만 법정 의무평가 대상으로 축소조정한다. 그리고 지역별 실정에 맞추어 시·도조례로 확대하거나, 현재 건축법과 조례에 의거 건축심의회 형식적·이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약식 교통심의회제도를 보완하여, 차량 출입구등 주요 사항을 평가하는 [간이교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통합영향평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실효성있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기로 하였다.

또한 각 평가제도의 평가 항목을 재분류·조정하여 5개 분야로 재구

성하고, 평가서는 평가 분야를 포괄하는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토록 하여 사업자의 비용 절감을 최대화 하면서 분야별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통합영향평가서의 심의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5일로 단축 조정하고, 대상사업에 관한 주민 이해를 돕고, 내용을 공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중앙정부는 통합영향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비용과 기간을 제시했다.

< 통합평가서 비용·기간 절감 예시 >

- 60만평 정도의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영향평가별 평가서 작성에 환경 1억 1천만원, 교통 1억원, 인구 4천만원, 재해 8천만원으로 총 3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평가 심의 기간은 175일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나
  - 각 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중 교통·인구·지형·지질 등 상호 중복·공 통적인 부분이 조정된 통합평가서를 작성, 일괄심의(협의)함에 따라 용역비용은 35% 절감되고 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45일 이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며
  - 아울러 통합평가서에 의거 일괄 작성·검토됨에 따라 별도 검토시와 달리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됨
- '97년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S지방 산업단지의 경우(120만평), 당시 평가서 용역비가 환경 1억 5천만원, 교통 1억 1천만원, 재해 2억 6천만원 총 5억 2천만원(인구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이 소요되었고, 평가심의 기간의 186일 소요되었음
  - 통합평가서 항목 조정 등으로 용역비는 3억 5천만원 정도, 심의 기간은 45일로 각각 절감·단축될 수 있을 것임

□ 통합영향평가법 입법예고

'99년 7월 23일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1) 제정취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제정취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이 시행되고 있는 바, 유사한 영향평가제도가 별도로 시행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요내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은 9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등 환경·교통·재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안 제 4조)했고,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의 조례로 평가의 대상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분야에 대하여 실시(안 제 5조)하며, 분야별 평가항목은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안 제 8조) 있다.

넷째, 평가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안 제 9조)해야 한다. 교통분야만을 평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섯째, 사업자는 평가서 및 평가서초안 등의 작성을 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안 제 10조)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범위에 따라 소관부처(환

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에 등록하도록 했다.(안 제 11조)

여섯째, 평가서 작성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평가 대행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 13조 및 제 44조 제 2항)

일곱째, 평가서가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 21조 및 제 44조 제 1항)

여덟째, 관계부처는 협의 내용을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승인기관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안 제 23조) 관계부처의 협의 내용 상호간에 모순·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사업승인기관에 최종 협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홉째, 대상사업의 착공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안 제 31조)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 44조 제 1항)

## 2. 통합영향평가지 도입해야 할 제도

### 1)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부는 1997년 9월 지역 환경기준 설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와 기준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환경기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지역환경기준을 「제주도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이라는 용역에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sup>24)</sup> 과제는 통합영향평가지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24) 제주도,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설정」, 1997, pp.794-959.

- 지역 환경기준 설정 방안
  - 「제주도 친환경개발을 위한 지표 설정」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고 추가할 내용을 추가하여 통합영향평가지 적용될 제주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공포한다.
  - 섬으로서 제주도가 지탱할 수 있는 환경수용능력(환경용량)을 제시한다.
  - 지하수 부존량 및 지역별 사용 가능한도를 제시한다.
  - 제주도가 혼잡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대기오염 및 소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자동차의 양 및 도로 공급 계획과 장기적으로 시기별 자동차 수용량등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한다.

##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제주도의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에서는 분야별 친환경적 전략을 위한 제도로써 네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25)</sup>

첫째, 자연환경감사제도이다.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요소에 대한 문제점 및 원인을 조사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sup>26)</sup>

둘째, 환경용량평가제도이다. 환경용량평가제도는 기존에 환경수용능력(환경용량)을 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함으로써 환경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했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용량 개념 적용 및 수용력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sup>27)</sup>

셋째, 통합·광역 환경영향평가제도이다.

넷째,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SEA :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등이다. 전략환경평가제도란 ‘아직 승인되기 전의 제안된 정책(Policy),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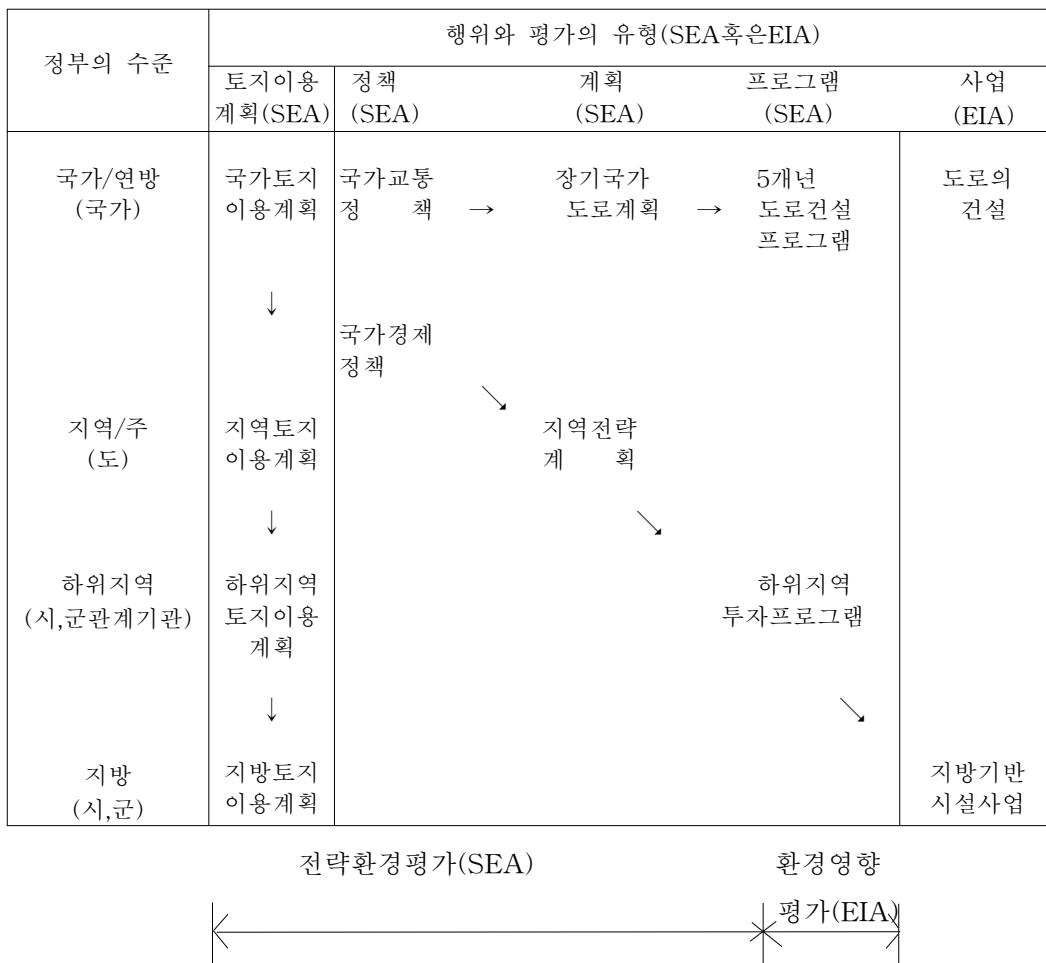
25) 제주도,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설정」, 1997, p.599.

26) 제주도, 상계서, 1997, p.704.

27) 제주도, 상계서, 1997, p.708.

(Plan), 혹은 프로그램(Program)<sup>28)</sup>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Process of Evaluation)<sup>29)</sup>이다.<sup>29)</sup> 즉, 상위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림 6-2> 포괄적인 계획과 평가체계내에서의 사업과 평가의 순서



<그림 6-2><sup>30)</sup>은 정책,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 수준으로 구분되는

28) 이 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PPPs 또는 3Ps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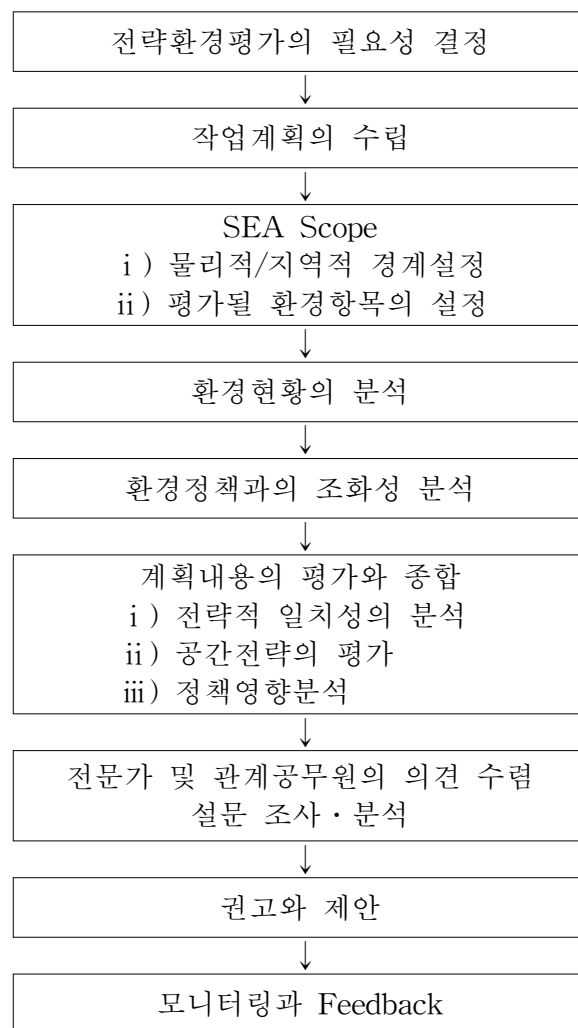
29) 정책환경평가 혹은 대안적인 프로그램 환경평가(PEA : Programmatic Environmental Assessment)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30) Nixon, J.A., B.D. Clark,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Key Issues and Future Direction," 「지속가능한 환경영향평가 : 제 22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세미나 논문집, 1994, pp 49-70.



사업의 범주 및 SEA 혹은 EIA(Environment Impact Assessment)의 평가 체계와 국가, 도, 그리고 시, 군으로 구분되는 정부 수준에서의 토지이용 계획을 상호 관련지어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6-3> 전략환경평가 과정도<sup>31)</sup>



31) 제주도,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설정」, 1997, p.430.

제주도는 현재 이 체계내에서 볼 때 계획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1994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평가는 전략환경평가를 이용하여 환경성 검토 및 계획간의 일치성의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sup>32)</sup> 그리고 환경과 경제가 통합된 의사결정 과정의 구축과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제 2단계 주요 추진 과제에 넣고 있다.<sup>33)</sup>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할 경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의 의미있는 정보를 담기 위하여 개발 과정에서 되도록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고 늦게 작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참고하여 조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사전 기본 구상이나 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한다는 것도 영향평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sup>34)</sup>

사실 여러가지 이유로 전략영향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국가차원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sup>35)</sup>

그러나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은 큰 재산이며 앞으로 이러한 환경을 잘 보전해야 1차산업이나 관광산업 등 제반산업이 발전하게 되므로 자연환경의 이용을 근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시에 이 전략환경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환경성 검토라는 형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이 도입된 바 있으므로

---

32) 제주도, 상계서, 1997, p.429.

33) 제주도, 상계서, 1997, p.597.

34) 한국법제연구원, 전계서, 1994, p.94.

35) 홍준석, “제주도 지하수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제주발전연구원·제주대학교환경연구소 학술세미나, 「제주지하수 영원한 자원인가?」, 1999.3.24, p.43.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을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은 용이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방안
  -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
  - 심의는 제주도지사가 하며 계획 수립시 전략환경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개별사업으로 인한 전략환경평가는 Screening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일반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 납부하면 자치단체가 집행한다. 이러한 전략영향평가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 3) 축적영향평가의 도입

축적영향평가는 개별적으로는 사소한 효과 밖에 없는 행위도 집적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미국 환경질위원회(CEQ :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에서는 1978년 축적영향을 “기관 또는 개인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과거·현재 및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미래에 다른 행위에게 증가적으로 미치는 환경영향”이라고 정의 했다.<sup>36)</sup>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는 간단한 집계에 의하여 전체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행위가 반복적이기 때문에 증량적 효과를 가지는가, 다양한 다른 활동이 동시에 또는 장래에 일어나 특정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국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측정 가능한 정도에 도달할 것인가 등 “반복적·집적적·계속적·지연적” 기타 여러 종류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36) 한국법제연구원, 전게서, 1994, p.61.

앞으로 통합영향평가를 논의할 때는 어느 하나의 행위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축적영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지금까지 논의의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와 같이 환경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충격 완화 장치로서의 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축적영향평가제도를 실질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축적영향평가 도입 방안
  - 통합영향평가 운영 부서에서는 현재의 환경 수준과 기존 개발사업 결과 누적적으로 훼손된 내용과 정도를 기록하여 개발사업자와 대행기관에 제시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타 개발사업으로 인한 누적적인 훼손 결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하여 심사 받도록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축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발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4) 평가사업의 결정에 Screening 기능 도입

전략환경평가제도는 기법상 Screening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Screening제도의 도입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든 구체적인 사업이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혹은 아닌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Screening제도는 일명 초기평가(Initial Assessment)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기평가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정식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Screening 과정 다음 단계인 예비환경평가(IEE : Initial Environmental Evaluation)와는 구별된다.

Screening 과정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개별 사업 뿐만 아니라 법령, 행정 개혁들도 그 범위에 넣고 있다. 이 방법은 각종 행위와 활동 그리고 당해지역의 환경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미래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또는 필요가 없는지를 미리 명확하게 객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미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케 하고자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할 수 있다.<sup>37)</sup>

이러한 Screening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로 나타난다.

① 부정적 환경영향이 없어서 더 이상의 활동이 요구되지 않거나, 규명된 영향이 관계 규정에 따라 환경 문제를 고려한 설계가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방지될 수 있다.

② 예측되는 환경적 영향의 성질이나 범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약식평가(Initial Environmental Evaluation)를 통하여 더 자세한 영향의 규명이 요구된다.

③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환경평가 패널(Environmental Assessment Panel)을 통하여 정식 평가(Formal Assessment)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Screening 결과 유형이 ①과 같이 나타났을 경우는 정식 환경평가 절차에 따른 더 이상의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이 사업에 관한 사항만을 검토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②와 같이 될 경우는 초기약식평가를, ③과 같을 때는 정식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sup>38)</sup>

---

37)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 “인간 환경의 질에 중요한 영향(significantly affecting)”을 미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유해한 환경영향(schädliche Umwelteinwirkungen)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유해한 환경이란 특히 토지·물·대지·기후 등 생태계 및 자연계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서, 그 모양·범위·지속 시간으로 인해서 넓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38) 윤창원,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청, 1983, p.92 / 최병찬·최원영, 「환경영향평가제

이 Screening의 의도 중 하나는 법령이나 계획 단계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간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자는 것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를 정해놓고, 그 분야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Screening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케 한다는 의도가 있어서 개발사업자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김귀곤은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는 환경영향을 야기시키리라고 기대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어야 하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잠재적 범위는 상당히 넓으므로 정책,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sup>39)</sup>

제주도의 경우에도 통합영향평가 시행시 정책이나 계획 과정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Screening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5) 평가의 구체적 항목 및 범위 결정에 Scoping 기능 도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항목의 선정 방법은 크게 2가지 유형에 따르고 있다.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것처럼 평가 항목도 미리 정하지 않고 제안된 사업 활동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분석한 예비 환경평가를 통하여 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Scoping 방법이 하나의 유형이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별로 평가 항목을 미리 정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또하나의 유형이다.

이들 2가지에는 물론 어느 한 방법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식 검증된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평가 항목은 여러가지의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떠한 형식을 취하던지 환경영향

도-이론과 실제」, 녹원출판사, 1993, p.44.

39) 김귀곤, 「환경영향평가기법 발표회」 자료, 환경영향평가협회, 1987.11, p.6 / 최병찬·최원영, 「환경영향평가제도-이론과 실제」, 녹원출판사, 1993, p.45.

평가의 활동 개시 이전에 일정한 평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Scoping 과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1978년 미국 환경위원회규정에서는 Scoping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루어질 문제의 범위를 결정하고 제안된 활동과 관계된 중요 문제를 선별하기 위한 공개된 과정이 조기에 마련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Scoping이라 칭한다”

따라서, Scoping 과정은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혁신적인 것으로서 무엇이 정말 제안된 사업에 관하여 의미있고 없는가에 대하여 조기에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한 노력이며, Scoping은 또한 제안 사업에 대한 반대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주요 문제들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Scoping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기간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시간 및 기관간의 책임을 규정한다.<sup>40)</sup>

즉, Scoping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심층 분석을 요하는 다음과 같은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①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주요한 환경 이슈(주요 평가 항목의 선정)를 판별하고,
- ② 평가되어야 할 제안 사업에 대한 대안의 범위 결정 등과
- ③ 기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평가서의 작성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Scoping은 환경영향평가나 의사 결정 과정(Decision-making Process)에서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는 첫 단계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제안 사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조기에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은 일정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에 따라 사업자나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평가의 범위를 정하여

40) A Rivera-Cordero,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세미나 발표집」, 환경청, 1982, p.172 ; 최병찬·최원영, 전게서, p.60.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중국에 가서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Scoping 과정을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등으로는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환경 조건에 적절한 대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므로 제주도의 통합영향평가 실시 과정에서 이러한 Scoping제도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 Scoping제도 도입 방안
  -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우선은 기존 평가 항목 중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영향 조사나 저감 방안 수립시 더욱 강화해야 할 분야를 자치단체가 사업자와 대행기관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 후 통합영향평가시 축소해도 될 항목을 자치단체가 정해주는 방법이다.
  - 비용은 Screening비용과 함께 사업자가 부담한다.

### 3.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제도 추진 방향

앞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외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징, 신문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통합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했다.

본 항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통합영향평가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요약 정리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6-1>와 같다.

제주도가 추진할 통합영향평가는 위에서 제시한 <표 6-1>의 내용과 맥락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세부 추진 전략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맥락과 방향을 수렴하여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표 6-1> 통합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구 분	통합영향평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① 사전예방성 : 사업이 주변에 미칠 영향을 미리예측, 저감방안 마련
	② 합목적성 : 환경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사업의 합목적성 확보
	③ 절차의 민주성 :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주민 참여 확보
	④ 의사결정도구 : 승인기관의 의사 결정에 도움
	⑤ 정보성 : 환경관련 자료의 종합적인 정보자료로서의 역할
외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징	① 미국 : Screening과 전략환경평가, Scoping, FONSI제도
	② 영국 : 환경영향평가법이 없고 개별법으로 규정
	③ 프랑스 : 면제할 수 있는 사업,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 상세한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
	④ 캐나다 : 공개심사와 정보공개, 주민참여촉진기금제도
	⑤ 네덜란드 : Scoping guideline이 주민 참여하에 작성됨
신문보도에서 도출된 문제점	① 환경영향평가 : 계획단계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착수하는 일, 분절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일, 보고서의 모사, 허위보고서의 제출, 대행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업기관의 계열사이거나 사업의 설계·시공·타당성보고서를 작성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비전문가 위촉, 협의내용이 50%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평가위원관리 및 운영관리의 문제,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는 일 등
	② 교통영향평가 : 사업범위를 분할해서 평가를 기피하는 것, 허위보고하는 것, 사업지 주변 가로 서비스 수준평가 등을 하지 않는 것, 소수의 업체가 많은 영향평가를 담당하여 소홀하게 하는 것, 제주도의 경우 1993년 이후 교통영향평가 사후 점검한 사실이 한 건도 없음, 공공기관이 교통영향평가 무시.
	③ 지하수영향평가 : 보고서 모사
	④ 경관영향평가 :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종합개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범위 불일치, 도시구역 밖의 경우 12m기준으로는 미흡, 주민참여가 형식적임.
개별영향평가에 따른 문제	① 개별평가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분석이 불가능
	② 행정기관 창구 다수의 문제와 중복 평가로 비용 중복 투자
	③ 사업 착수 지연 야기
	④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⑤ 각 평가마다 대상 사업이 다르고 기준도 불명확 함
	⑥ 개별 심의 결과가 상충될 시 조정기능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됨
통합영향평가지 도입해야 할 제도	①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 및 운영
	② 계획단계에서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③ 누적되는 영향평가를 예측하여 실시하는 누적환경평가제도 도입
	④ 대상 사업 여부를 평가하는 Screening제도 도입
	⑤ 주민 참여를 전제로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Scoping제도 도입

#### 4.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예상 문제점

##### 1) 관련법규의 저촉

제주도가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건설교통부가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는 심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권한상의 문제는 재해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적용하여 통합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의 심의권을 위임 받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 2) 통합영향평가 시행시 예상 문제점

통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이 필요하다.

첫째, 개별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게 되면 운영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지 업무 분장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통합영향평가의 대상 범위를 하나로 조정해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던 범위를 그대로 통합영향평가에 적용하게 되면 운영 방법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개별영향평가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발 절차의 간소화와 사업 범위의 축소를 야기하게 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락하게 되므로써 환경보전 보다는 개발 위주로 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

셋째, 개별영향평가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다. 통합영향평가를 시행할 경우 사업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종합엔지니어링업체가 아닌 경우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몇 개의 업체만이 통합영향평가를 시행할 경우 영향평가가 독점되므로써 평가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넷째, 업무독점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실행될 수 있다.

다섯째,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sup>41)</sup>

① 교통영향평가가 도입된 1986년말 현재 전국 자동차 보유 대수는 1,611,375대였다. 그러나 1998년말 현재는 10,469,599대로 약 10년전보다 6배가 증가한 현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규제로 간주하여 환경 및 건축분야에 통합한다는 것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통행권은 실종당하는 것으로 보게된다.

②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1년간 건축 허가 건수의 0.15% 정도로 1만건 중 15건 정도의 초대형 건축물만이 평가 대상이 된다.

주변 교통의 개선없이 대형 건축물이 완공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 통행인들은 당해 건축물로 인해 엄청난 통행 규제를 받고 있다.

③ 교통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능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개발 기능이지만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환경 보존 목적과 보존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상 서로 상치된다. 평가지역 및 대상에서도 교통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도시 내부에서의 택지·산업단지·도시설계·도로·철도개발 등의 사업이나 업무·판매·위락·전시·관람집회 등의 용도의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지방부 4대강 수계지역의 수자원·하천개발·매립개간사업·도시·에너지·산지개발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며, 현재 중복해서(교통과 환경영향평가) 동시에 평가를 받는 사업 건수는 15%내외이다.

평가 기간도 교통의 경우는 3-5개월이 소요되나 환경의 경우는 4계절 변화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12개월 내외 소요된다. 따라서 두 기능이 통합되더라도 통합되는 사업의 평가만 심의 기능이 더 추가될 것이고, 기간 단축면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전문성만 결여될 것이다.

④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분야와는 달리 공공의 도로 및 각종 교통시설과 건

---

41) 정의용, “교통영향평가제도, 독립적으로 문제점을 보완 발전·강화시켜야,” 월간 「교통」, 1999.2.

측 계획을 수립하는 개별 부지 사이의 유기적인 동선체계를 제고시켜주는 유일한 제도로써 부지 내부만 고려하는 건축 계획과는 그 기능 및 업무 영역이 다르다. 따라서 상기 두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학문적 상이성과 공공적 평가 척도의 차이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 5.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세부 추진 전략

### 1) 통합영향평가 담당 업체

통합영향평가를 시행할 경우 대행기관을 어떻게 정하며 관리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영향평가제도의 경우 영향평가대행자를 개별법규에서 달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 경	교 통	인 구	재 해
○ 평가대행자 지정제 - 전문기술인력과 장비·시설 보유	○ 교통영향평가기관 - 인자나어링 활동 주 체 또는 교통관리 비영리 법인(기술인력 보유)	○ 영향평가 작성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소 · 대학부설연구소 · 인자나어링 활동 주체	○ 전문기술업체 대행

이러한 영향평가업체들 가운데 1998년 12월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현황은 <표 6-2>와 같다.

<표 6-2>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행기관은 총 50여 개이다. 소재지는 43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재해영향평가는 사전등록 등의 절차없이 평가서 심의요청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행정자치부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통합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큰 문제는 없다.

<표 6-2>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및 교통영향평가 지정업체

구 분	계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성격			교통대행기관동시 등록 여부
		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	용역업체 및 기타	
계	112	3	16	93	50
한강환경관리청	75	2	1	72	43
낙동강환경관리청	10	-	3	7	2
영산강환경관리청	4	-	4	-	-
금강환경관리청	7	1	2	4	2
대구지방환경관리청	8	-	3	5	1
원주지방환경관리청	4	-	1	3	2
전주지방환경관리청	4	-	2	2	-

자료 : 환경영향평가협회와 교통기술사협회의 내부자료, 1998.12. 참고 재작성.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등록 현황은 1998년 12월 현재 71개소이다.

실제 1997년 5월 현재의 기준으로 재해영향평가를 9건 수행했는 바 9개사업체 중 4개업체는 환경·교통·경관·재해 등 4개 영향평가 가능 사업자였으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거나 환경·경관·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3개 영향평가 가능 사업자가 5개 업체였다.<sup>42)</sup>

중앙정부의 통합영향평가시의 방침은 각 영향평가제도 및 대행자 요건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되 평가항목 분야별 대행기관과 전분야(5개분야) 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평가 대행자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중앙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안 제 11조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 각 영향 평가 대행자들을

42) 1999.2.26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중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개선” 중 참조.

보호하기위하여 2개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통합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sup>43)</sup>

□ 제주도의 대행기관 지정 방안.

제 1안 : 통합영향평가 업체로 등록 된 업체만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문제점 :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영향평가를 현재 50여개의 업체가 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통합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기존의 대행기관들이 통합영향평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시키면 통합영향평가 업체가 많아지게 되어 통합업체로 등록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행기관의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의 인력과 편성으로 통합영향평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통합영향평가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

제 2안 : 통합영향평가라 하더라도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나만을 시행할 경우도 있고, 두 개의 영향평가를 시행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되는 영향평가를 하나의 업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통합영향평가중에서 해당 영향평가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모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는 사업이 경우 제 1안과 같아지게 되므로 제 2안이 보다 포괄적인 안이라 할 수 있다.

제 3안 : 지금과 같이 개별영향평가를 이행하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통합영향평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 3안의 방식으로 실시하면 제주도내에 있는 단종업체로 등록된 영향평가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 현황 조사 등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기여도가

43) 1999.2.26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중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개선” 중 참조.

높아질 수 있어 제주도내의 통합영향평가의 내실을 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종업체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제점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평가 비용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 2) 통합영향평가의 운영 주체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운영하는 주관 부서가 다르다.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어느 부서에서 담당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모색할 수 있다.

제 1안 : 통합영향평가는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되, 기존처럼 소관 부서의 협조를 얻는 방안이다.

심의와 운영은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되 협의 이행이나 점검 등은 소관 부서에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물론 심의와 운영시에도 소관 부서의 협조를 얻어 운영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전문성도 반영할 수 있다.

문제점 : 업무 협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개별영향평가 마다 심의 기구를 만들면 통합영향평가의 본래 의도였던 심의위원들이 공동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기능은 담보되지 못한다.

제 2안 : 통합영향평가는 모두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방안이다.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통합영향평가 심의 기구를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통합영향평가 업무 전체를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방법이다.

문제점 : 환경정책과내에 교통 실무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영향평가 부분을 환경정책과에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교통영향평가 담당자를 배치시켜도 교통행정과와 실질적으로 2중 업무를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 3안 : 통합영향평가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통합영향평가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통합영향평가단」이나 「통합영향평가과」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문제점 : 구조조정 방향이 기구를 축소하는 것인바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 맥락에서 보면 과를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 3) 통합영향평가의 심의 주체

통합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모색이다.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협의 내용의 이행과, 점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심의담당 부서내에 전문직 연구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합영향평가의 운영은 전문적이며, 학술적인 면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를 위한 전문직 요원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확보와 통합영향평가제도 정착시까지 현행 위임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조례로 확대되는 통합영향평가대상의 협의(심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직접 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시·도에서 담당하도록할 계획이다.<sup>44)</sup> 이렇게되면 법정 평가대상 최

44)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정부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평가심의를 위임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업승인권과 함께 영향평가의 심의 기능을 과다위임할 경우 견제기능 상실과 영향평가를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로 인식하는 등 형식화되거나 시·도의 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성결여로 평가제도의 부실화를 우려



소범위 상향조정으로, 시·도조례로 정하게 되는 규모확대와 평가서 취합·통보 등의 기능을 승인기관이 수행하게 되어 사실상 상당한 위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심의(협의)절차는 해당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심의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sup>45)</sup>

#### □ 제주도의 심의 절차 방법

제 1안 : 통합영향평가를 환경정책과에서 심의하는 방안이다.

통합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심의할 때는 전원 참석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의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운영상 편리하다.

문제점 : 통합영향평가는 심의대상 모든 업무를 한번에 심의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심의위원 전원 출석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제 2안 : 통합영향평가와 개별평가를 동시에 운영하며, 소관부서도 다르게 하는 방안이다.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과 개별평가 심의위원을 따로 정하고 관리하며, 현재의 제도처럼 개별평가로 진행하되 통합해야 할 영역만 합쳐서 심의하는 방안이다.

하고 있다.

45) 중앙부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본부) 및 지방환경청이 담당하며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본부)협의사업으로는 승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사업,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규모에 따라 건교부 및 시·도지사가 담당하며 중앙교통심의회(건교부), 지방교통심의회(시·도)를 구성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구영향평가는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점 : 통합영향평가와 전체적인 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면 원만하게 진행되나 그 역할을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제도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중첩되는 부분은 통합으로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조정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 4) 통합영향평가의 시기

환경영향평가·경관·교통·재해영향평가는 사업 승인 전에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하수영향평가는 사업 승인과 관계없이 지하수 굴착(개발)·이용 허가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영향평가는 다른 영향평가와 달리 사업이 승인되고 착공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할 때 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이 지하수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제 1안 : 통합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하수영향평가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 57조의 2에 따르면 토지굴착 예정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이내의 지역에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에 활용 가능한 지하수공이 없는 경우는 지하수 개발후 지하수 이용허가시 제출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하수 공이 있는 경우는 사업 승인전에 지하수 영향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토지굴착 예정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이내에 지하수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합영향평가하도록 한다.

제 2안 : 평가 시기가 불일치하는 지하수 영향평가는 통합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구조적으로 지하수 영향평가를 타 영향평가와 시기적으로 일치시키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하수영향평가는 성격상 통합영향평가를 시

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

#### 5) 환경관련 정보의 집성·체계화 및 공개

환경의 변화와 추세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환경 구성 요소의 주요 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며, 각각의 환경 변수는 상호 복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누적·상승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 및 기후의 경우에도, 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기상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료의 부족과 시일의 촉박 등으로 실측없이 광역적인 기존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지성이 결여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계의 자연자원 현황 및 이용 실태, 하천 및 수자원의 수리·수문, 각종 기상 자료와 국토이용계획 등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생산·소유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의 정보 접근 제한과 자료 부족, 기관별 목적에만 사용 가능한 단편적 관리 등으로 환경영향의 예측·평가에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환경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고 자료의 축적과 개발된 기법의 검증 및 활용을 위한 환경 정보망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조사·예측·평가의 불확실성, 환경영향의 중대성 및 대안 범위의 불명확성, 환경보전 대책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와 검증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에서와 같이 환경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보공개 범위와 이용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46)</sup>

환경영향평가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 습득에 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4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1998.8, p.148.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는 물론 교통영향평가나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DB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단위의 상세한 자료는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간다 하더라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서 지역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DB화가 필요하다.

운영 방법은 통합영향평가 대행기관에게 파일 자료를 주고 미시적인 자료는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영향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자료 조사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평가의 엄밀성도 담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 환경관련 정보의 공개·제시 방안
  - 자치단체는 환경기준과 수용 능력등의 자료와 함께 공통적으로 이용하여 참고하여야 할 자료를 사업자와 대행기관에게 제시한다.

## VII. 제 언

지금까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 교통, 재해, 경관, 지하수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내용,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특징, 우리나라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 통합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대안별로 제시하였다.

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은 규제 완화, 개발사업상 장애되는 제도의 개선, 자치단체의 업무의 과다와 중복에서 오는 부담, 중복 조사와 중복 평가로 인한 비용 부담, 주민참여제도의 형식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제도 개선의 동기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본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영향평가제도들을 만들어낸 배경들을 이해하고 그에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서 개선안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남은 과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문제점, 세부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통합영향평가 사업 범위의 지정과 사업 내용 지정 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아울러 제주도 당국에서 통합영향평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실천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요약 제언하는 바이다.

① 통합영향평가 담당업체에 대해서는 첫째, 통합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케 하여 등록된 업체만 통합영향평가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 제주도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과 경관영향평가대행기관들이 참여 컨소시엄형태로 2-3개의 업체를 설립, 통합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중앙정부는 한시적으로만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계속적으로 이 방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② 통합영향평가의 운영 주체는 우선은 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방

법이다.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심의주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장기적으로는 운영과 심의기능을 담당하게 될 부서나 기관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 심의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되 먼저 개별 과에서 분과별 심의(소심의)를 거쳐서 제안된 것을 환경정책과에서 통합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분과별 심의와 통합심의를 동시에 수행하면 기존 개별영향평가제도가 가지는 심도있는 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리고 개별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각 분야간에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심의기관도 환경정책과에서는 통합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별영향평가부분은 해당과의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면 된다.

④ 통합영향평가의 시기는 사업승인전에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하수 영향평가의 경우는 사업승인후 지하수 관정을 개발할 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하수 영향평가는 별도의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승인후 지하수 관정을 개발할 때 받도록 하되, 토지굴착 예정 지점 기준 반경 1km이내에 지하수공이 있는 경우는 사업승인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⑤ 자치단체는 통합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대행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GIS data형태로 편집한 후 CD롬으로 배부하고 있다.

대행기관들이 타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복 조사하거나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시 조사하여 파악하는 중복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행기관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통합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자와 대행기관들이 절약한 영향평가의 비용 중 일정부분을 자치단체에 기부하도록 하여 통합영향평가기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 조사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자료를 충실히 비축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

① 통합영향평가가 이루어지므로써 기존에 활동하던 영향평가업체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수입이 줄어들고, 덤핑의 방법으로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일어날 수 있다.

통합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분야의 대학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가제도의 존재, 성장여부가 해당분야 대학교육의 존재, 성장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영향평가를 추진하되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것은 물론 통합영향평가 대행기관들이 피해를 입지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장기적으로는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 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정하는 스크리닝제도와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을 정하는 스코핑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영향평가제도 운영의 경직성이다.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제도, 스코핑제도 등은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해 줄 것이며, 비용의 절약과 평가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③ 축적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본 전제는 어떠한 사업이 끼치는 영향 정도를 추산하는 기법의 개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적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므로써 대상사업 미만의 소규모 사업들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거나 동시에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통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평가하는 기법도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는 축적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평가기법을 개발해야 개별 사업들이 누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창훈·강영훈, “한국과 주요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1997.
- 김귀곤, 「환경영향평가기법 발표회」 자료, 환경영향평가협회, 1987.11.
- 김황배·추상호,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96년 교통영향평가서 분석」, 교통개발연구원, 1998.2.
- 노재식,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세미나발표집」, 환경청, 1981.10.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1998.8.
- 부산광역시 연구단, 「재해영향평가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 34회 지방행정 연수대회, 1996.11.14.
- 심재현, 「재해영향평가제 시행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 유철상,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발전방향」, 환경처 평가제도와 환경정책토론회 회의자료, 1994.11.22.
- 유충렬,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영향평가제도들 종합적이고 실효성있게 통합하여야,” 「월간 교통」, 1992. 2.
- 윤창원,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청, 1983.
- 정의용, “교통영향평가제도, 독립적으로 문제점을 보완 발전·강화시켜야,” 「월간 교통」, 1999.2.
-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제주도 관광지개발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토론회자료, 1999.3.30.
- 제주도, 「제주도개발특별법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1997.8.
- 제주도, 「제주도 친환경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설정」, 1997.
- 제주도, 「환경·경관·교통·지하수영향평가(조사)에 따른 통합영향평가서 작성 운영지침」, 1996. 12.
- 최병찬·최원영, 「환경영향평가제도-이론과 실제」, 녹원출판사, 1993.
- 한국법제연구원, 「환경영향평가법연구」, 1994.
- 한상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환경관리인」, 1995.9.
- 홍준석, “제주도 지하수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제주발전



연구원 ·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 학술세미나, 「제주지하수 영원한 자원인가?」, 1999.3.24.

A Rivera-Cordero,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세미나 발표집」, 환경청, 1982.

Nixon, J.A., B.D. Clark,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Key Issues and Future Direction," 「지속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 22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세미나 논문집, 1994.

Ronald E. Boss & Albert I. Herson. 「Mastering NEPA : A step-by-step Approach」, SOLAND PRESS BOOKS, 1993.

## 부록 |

###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영향평가 관련 조항

#### □ 환경영향평가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14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② 제 1항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 16조 내지 제 27조의 환경처장관은 이를 도지사로 본다.
- ③ 도지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제 6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등)

법 제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풍수해대책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

- 작전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 6조의 2(환경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승인·의견 청취등의 절차를 밟기전에 법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 8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외에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중점 심의할 사항과 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 24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등)

- ① 법 제 1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이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자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인 경우
  2.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경우
- ②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동의

2.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 등의 보완제시
  3. 사업계획의 조정 (사업규모·내용, 시행시기의 조정 또는 위치변경 등)
  4. 사업시행의 불가
-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심의결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검토·보완등의 조치가 완료된 결과 (이를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 11. 1)

## □ 경관영향평가

### <제주도개발특별법>

#### 제 24조(경관영향평가)

- ① 제주도에서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이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한 서류(이하 "경관영향평가"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기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를 받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향평가의 실시를 경관영향평가능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자본금 등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자가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대상의 범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 24조의 2(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등)

- ①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등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경관영향평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대행업무 및 운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제 14조 (경관영향평가대상 건축물등)

- ① 법 제 24조 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증축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 관광지 및 관광단지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로서 연면적이 6천6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것
  2.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로서 연면적이 3천3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높이가 12미터이상인 것.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과 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 및 2층이하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시설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또는 특별관리지구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로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삭도시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관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 6조 각호의 사업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
2. 경관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 및 공작물(연면적 또는 높이를 100분의 30미만의 범위안에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이 영 시행일 현재 준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축물 및 공작물(100분의 30미만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가설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과 높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지표면에서 높이 2미터미만인 공작물은 연면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면적 또는 높이의 산정방법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법 제 2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 절차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95.6.30]

제 14조의 2 (평가대행자의 지정등)

- ① 법 제 2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자본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의 2와 같다.
- ② 도지사는 평가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평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6.30]

제 14조의 3 (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등)

① 법 제 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대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2. 타인에게 평가대행자지정서를 대여하거나 경관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3. 법 제 2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정요건을 다시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 24조의 2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기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5.6.30]

####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 제 44조 (면적·높이의 산정방법)

영 제 1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높이의 산정방법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높이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5.11.1>

1. 연면적 :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공작물의 연면적 :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3. 공작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 부터 당해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하되 공작물의 대지에 접하는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접하는 범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한다

##### 제 44조의 2 (경관영향평가대상 건축물의 제외 등)

영 제 14조 제 1항 제 2호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한다)와 같다

1. 창고시설
2. 축사시설 (양계·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3. 식물 관련시설 < 신설 '95. 11. 1>

제 45조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등)

법 제 2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영 제 14조 제 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로 한다. 다만, 전기 설비기술기준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중 농·림·축·수산업과 가정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높이가 15미터 이하의 목주·철근 콘크리트주는 제외한다. <개정 '95. 11. 1>

제 45조의 2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사신청등)

법 제 24조 제 1항 및 영 별표2에 의한 경관영향평가서 초안공고 및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11. 1)

제 46조 (경관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등)

① 법 제 24조 제 4항 및 영 별표 2에 의한 경관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 11. 1>

1. 사업의 개요
  2. 경관영향평가서초안의 주요내용
  3. 열람장소 및 기간
  4. 주민의견 제출장소·기간 및 방법
  5. 기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경관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는 당해 시·군 또는 읍·면·동 및 사업예정지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고 14일이상의 기간동안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1>
- ③ 경관영향평가서초안의 열람장소는 당해 시·군 또는 읍·면·동 및 사업



체의 사무소 (본사가 타시도인 경우에는 지사 또는 현장사무소)로 하고  
경관영향평가서 초안과 별지 제 5호서식의 주민의견서를 비치하여야 한  
다.

제 47조 (경관영향평가서초안의 서식등)

- ① 영 별표 2에 의한 경관영향평가서초안의 기재 사항 및 작성내용은 도지사  
가 따로 정한다. <개정 '95. 11. 1>
- ② 경관영향평가서초안은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  
는 경관훼손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분석하고 모든 대안을 비교한 후 그  
저감방안과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경관영향평가서초안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전.후로 구분하고 평가의 척도가 되는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 ④ 삭제 <'95. 11. 1>

제 48조 (경관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등)

- ① 경관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및 작성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경관영향평가서는 건조하지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경관현황및 경  
관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사업전·후의  
경관을 비교할 수 있는 도면·사진·그림등을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모형이나 컴퓨터시뮬레이션 (COMPUTER SIMULATION)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자가 경관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때에는 문서로 하여야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49조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사절차등)

- ①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영향평가서에 대한 기본요건 검토

2.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3.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한 검토
- ② 경관영향평가서의 기본요건 검토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심사요청시기 및 경관영향평가서 작성자 (평가대행자를 포함한다)의 적정성
  2. 삭제 <개정 '95. 11. 1>
  3. 경관영향평가서 구성 및 기재방법의 적정성
- ③ 도지사는 경관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영 별표2에 의한 선행절차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경관영향평가서의 구성 또는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때에는 재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0조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등)

- ① 경관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5. 11. 1>
- ③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관계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5. 11. 1>
- ④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및 경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95. 11. 1>

제 51조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등)

- ①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자로서 경관영향평가를 신청한 경우
  - 2.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이 경관영향평가서의 작성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에 참여한 경우
- ④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그심의에 관계되는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 11. 1>
- 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2조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의)

- ①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및 심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서면심의
    - 가.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지역 범위설정의 적정성
    - 나. 경관현황 조사의 충실성
    - 다.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계절적 영향등)의 예측, 평가의 적합성
    - 라. 대안설정의 타당성 및 경관훼손·저감 대책의 적정성
    - 마.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제시된 주민의견 반영의 충실성
  - 2. 현장심의
    - 가. 점적 심의 : 경관영향평가 대상물을 중심으로 하여 전면·측면·후면의 4개지점 또는 8개지점에서 대상물을 향한 평가와 대상물에서 같은 방향을 향한 평가를 실시하되 근경(500미터 내외), 중경(1킬로

미터 내외), 원경(2킬로미터 이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때, 조망점의 선정은 지형지물을 참고하여 선택할 수 있다.

나. 면적 심의 : 경관영향평가 대상물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지역, 취락지역, 관광지 또는 학교, 공공·생활시설등 집단시설및 오름·능선에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경관의 시각적 잠식의 정도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다. 동적 심의 : 경관영향평가 대상물을 중심으로 하여 국도·지방도·시군도 관광도로등 노선별 이동상황에서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상에서 대상물을 향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1>

3. 자료 및 기기심의 : 주변경관의 변화를 사업전·후의 사진, 그림, 모형, 컴퓨터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95. 11. 1>

② 도지사는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그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계획에 내포된 경관영향 저감방안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보완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영향평가서의 심의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관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동의
2. 경관훼손 저감방안
3. 사업계획의 조정 (사업규모, 높이, 형태 또는 위치변경등)
4. 사업시행의 불가

제 53조 (경관영향평가서의 결정기준등)

① 도지사는 제 5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검토 분석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경관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동의
    - 경관영향평가서의 내용등이 제 49조 제 2항 및 제 5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에 이의가 없는 것
  2. 사업계획의 조정
    -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보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사업의 규모·높이·형태 또는 위치변경 조정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3. 사업시행의 불가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경관 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해사업의 시행을 할수 없도록 하는 것
- ② 경관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기간은 경관영향평가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20일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 11. 1>
  - ③ 도지사는 경관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 6호 의 2 서식에 의거 사업 별지 제 6호의 2 서식에 의거 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1>

제 54조 (경관영향평가서의 이행)

- ① 시장·군수는 건축허가 또는 협의시 경관영향 평가서의 심의내용에 따라 허가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평가서의 심사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5조(경관영향평가심사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 5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수 있다

1. 이의 신청서(별지 제 6호의 3서식에 의한다) <개정 '95. 11. 1>
  2. 이의신청 내용 및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대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대안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평가결과
- ② 이의신청은 경관영향평가서에 이미 제시한 내용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제시한 심사내용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 심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 심의에 관하여는 제 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심의기간은 당해 이의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검토 심의결과는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6조 (경관영향평가의 재심사)

- ①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영 제 14조 제 2항 제 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1>
- ② 제 1항에 의한 재심사 요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변경사유
  2.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3. 주민의견 수렴결과
  4. 사업공정 (공사진도,공정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등을 첨부)
  5.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경관영향의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③ 재심사에 따른 경관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은 제 4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 56조의 2 (경관영향평가 대행자 지정등)

- ① 법 제 2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6호의 4서식에 의한 대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영 제 14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 6호의 5서식에 의하고 도지사는 그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56조의 3 (평가대행자의 업무정지기준등)

영 제 14조의 3 제 2항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95. 11. 1>

## □ 지하수영향평가

###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제 15조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

- ① 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법 제 25조 제 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 제 57조 (지하수 굴착·이용허가)

① 영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굴착허가 또는 협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법 제 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로 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의 굴착 또는 이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5. 11. 1>

1. 토지의 굴착허가·지하수이용허가 신청서(별지 제 13호서식)
2.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굴착예정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지하수 착정 및 이용시설 설계도
5.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해당사항에 한함)
6. 사업계획서
  - 가. 삭제 <'95. 11. 1>
  - 나. 삭제 <'95. 11. 1>
  - 다. 삭제 <'95. 11. 1>
  - 라. 삭제 <'95. 11. 1>

② 제 1항에 의하여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은경우 토지의 굴착시공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한국수자원공사 및 건설업법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 면허소지자라야 한다. <개정 '95. 11. 1>

③ 영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이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11. 1>

1. 토지의 굴착허가·지하수이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5. 11. 1>



2. 삭제 <'95. 11. 1>
  3. 지하수의 이용계획서
  4. 지하수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그 사본.  
다만, 검사성적서는 허가신청전 1월이내에 채취한 시료의 성적이어야 한다. <개정 '95.11.1>
  5. 지하수 착정결과 (지질주상도, 양수시험성적서, 수리상수산출내역, 우물 장치 및 동력 장치 설치내역등) <개정 '95. 11. 1>
- ④ 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생태계의 보존·지하 수의적정관리 또는 공익을 위하여 지하수의이용허가를 매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지하수의 이용허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 4항에 의하여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지하수 이용허가기간 만료일 30일이전까지 지하수이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7조의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대상등)

- ① 영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 또는 이용허가(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 1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협의)를 받고자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1일 양수능력 30세제곱미터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먹는물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국방·군사시설사업 또는 농·축·수산업, 학교체육시설에 이용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세제곱미터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3. 해안변 지적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지점에서 염지하수를 개발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4. 지하수의 조사·연구등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

5. 토지굴착 예정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에 활용가능한 지하수공이 없는 경우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은 자가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에 정해진 규모 이상의 지하수 이용시설을 갖추어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허가 신청시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기재사항·심의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95. 11. 1>

제 57조의 3(지하수영향조사 대행자)

제 57조의 2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대행자에게 조사 및 조사서의 작성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수법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조사 업무대행기관
2. 지하수법시행규칙 제 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도 작성 대행자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 기술사
3. 교육법 제 8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이상의 대학 부속시설 중 지질 및 지하수관련 전공연구분야 박사학위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교수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 연구소 <신설 '95. 11. 1>

제 57조의 4(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등)

- ① 도지사는 영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지하수영향조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관계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2.1, '97.3.26,'98.4.8>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도의 환경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과장 <개정'98.4.8,

'98.9.14>

2. 지하수분야의 전문가 <신설 '95.11.1, 개정 '97.3.26>

## 부록 II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

#### 제 1조(목적)

이 법은 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인구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평가”라 함은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다. 당해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라. 당해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처리대책 강구
2. “사업자”라 함은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평가분야”라 함은 자연환경, 생활·경제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 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할 분야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각 평가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가. 자연환경, 생활·경제환경 : 환경부
  - 나. 교통 : 건설교통부, 환경부

다. 재해 : 행정자치부

라. 인구 : 건설교통부, 환경부

제 3조(국가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교통·재해·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환경·교통·재해·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조(영향평가대상사업등)

- 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각 사업별 평가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건설
  5. 도로건설
  6. 수자원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매립 및 개간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체육시설의 설치
  13. 산지의 개발
  14. 특정지역의 개발
  15.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6. 기타 환경·교통·재해·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5조(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 ① 영향평가는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영향평가의 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점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 6조(환경영향평가기준)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중 환경에 관한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으로 한다.

제 7조(영향평가대상지역)

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이하 “영향평가대

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 8조(영향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 9조(주민의 의견수렴)

- ①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사업자는 교통분야만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0조(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 또는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이하 “평가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실시를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11조(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

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자연환경, 생활·경제환경분야 : 환경부장관
2. 교통, 인구분야 : 건설교통부장관
3. 재해분야 : 행정자치부장관

#### 제 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 1호 내지 제 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 13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서 등을 작성하는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평가서 등의 내용을 무단복제하지 아니할 것
2. 평가서 등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3.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할 것

②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대행자의 등록증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2. 평가서 등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평가업무를 용역받지 아니할 것

#### 제 14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 ① 평가대행자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내지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 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 12조 제 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5.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 후 2년이내에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16조(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 ①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그 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 18조(평가대행실적등의 보고 등)

-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평가대행실적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19조(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통합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5조 제 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 20조(평가서의 협의등)

- ① 사업자중 대상사업 또는 대상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1조(평가서의 보완 또는 재작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 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등을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 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보완 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 22조(평가서의 검토등)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 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이 환경·교통·재해·인구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의 검토의견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 1항 또는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⑦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업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3조(협의내용 등의 통보)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평가서의 검토·심의 등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기관의 장 등과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의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 등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24조(협의내용 등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승인기관의 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등을 확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처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5조(이의신청)

- ①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 등은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승인기관의 장등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사업자가 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한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승인기관의 장 등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사항에 관한 처리가 완료된 후 당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 26조(평가서의 재협의 등)

- ① 사업자는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중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 등이 사업미착공기간에 있어서의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승인기관의 장 등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 5조 내지 제 10조, 제 20조 내지 제 25조의 규정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를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7조(재협의를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 ① 사업자는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② 승인기관의 장 등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 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 등(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를 내용 또는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사업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사업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29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①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환경·교통 또는 재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사업자가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 3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0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다른 법령에 의한 통보 등과 함께 할 수 있다.

제 31조(사후환경영향조사)

-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평가항목, 조사기간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 32조(재평가)

- ① 환경부장관(승인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



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 등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교통분야의 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등에 관하여 평가 및 심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 및 심의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당해 사업 등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⑤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분야의 재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3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 ① 사업자는 제 20조 내지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 또는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 등이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26조 또는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경우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업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4조(협의기준초과부담금)

- ① 환경부장관은 제 23조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 협의내용으로서 제 2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협의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 2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2조 제 5호·제 8호 내지 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② 환경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기준의 초과정도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기타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 21조 및 제 22조를 준용한다.
- 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⑥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협

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 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초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 35조(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립방재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 1. 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보완
- 2. 영향평가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여부 평가 및 개발
- 3. 기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36조(비밀엄수의 의무)

평가대행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7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관련부처의 장은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 38조(영향평가협회)

- ① 평가대행자 및 영향평가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영향평가에 관한 조

사·연구·교육·홍보 기타 영향평가관련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 40조(공동부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협의)

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41조(벌칙)

제 29조 제 4항 또는 제 3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42조(벌칙)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 2.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향평가 대행업무를 한 자(제 17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 3. 부정한 방법으로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
- ② 제 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1조 또는 제 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4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작성을 요구받은 자
  - 2.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 4.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5.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 6. 제 33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2. 제 2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조(환경영향평가법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을 폐지한다.

### 제 3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심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재심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등이 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 4조(평가대행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등록된 평가대행자 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평가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해당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 5조(기존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심의된 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협의된 것으로 본다.

제 6조(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7조(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향평가협회로 본다.

제 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9조(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중 제 28조 내지 제 32조, 제 68조를 삭제한다.

제 10조(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

- 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제 2조 제 6호·제 7호, 제 13조 내지 제 19조의 2, 제 19조의 4 내지 제 19조의 9, 제 23조 제 2항·제 3항, 제 35조의 3, 제 36조의 2 및 제 37조 제 1항을 삭제한다.
- ② 제 19조의 3 제 3항 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제 23조 제 4항 중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삭제하며, 제 35조 중 “평가기관 및 연구원”을 “연구원”으로 하고, 제 37조 제 4항 중 “제 1항 내지 제 3항”을 “제 2항 및 제 3항”으로 한다.

제 11조(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19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